중국 지식재산권 매뉴얼

2008.12



특 허 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otra

들 어 가 며

중국은 산업재산권 법 체제는 특허법(**专利法**), 상표법(**商标法**) 및 부정경쟁방지법(**反不正当竞争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중국법률들과 마찬가지로 법률에서 원칙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수많은 행정명령 및 사법해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산업재산권 법률의 특색을 간단히 살펴보면, 중국 특허법(**专利法**)은 우리나라와 달리 특허・실용신안 및 디자인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 이 세 가지 기술개발의 결과물을 발명창조(**发明创造**)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표법(**商标法**)은 1949년 건국 후 사회주의 과정을 거치면서 상표의 소비자보호 및 품질보증 기능을 강조하여 제품의 품질을 속이거나 소비자를 기만할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反不正当竞争法**)도 우리나라와 달리 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부정경쟁행위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행위를 규제하는 수많은 행정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산업재산권 침해구제에 대하여 법원에 의한 사법구제와 지방 행정청에 의한 행정구제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어, 중국에서 특허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받았을 경우 지방 지식산권국(**知识产权局**) 및 공상행정관리국(**工商行政管理局**)에 처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에 침해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산업재산권을 담당하는 행정관청도 우리나라와 달리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특허・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대해서는 국가지식산권국(**国家知识产权局**)이, 상표 및 부정경쟁방지에 대해서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 상표국(**商標局**)・상표평심위원회(**商标评判委员会**)・반독점 및 부정경쟁집행국(**反垄断与不正当竞争执法局**)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매뉴얼에서는 2005년 4월부터 개정을 추진해오던 중국 특허법이 지난 12월 27일 인민대표회의를 통과하여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부분을 각주로 설명하였으며 동시에 현행법과 개정법의 신・구 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중국 상표법도 현재 개정 추진 중에 있음을 첨언합니다.

이 자료가 중국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우리기업의 기본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자료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특허청 정덕배 파견관과 베이징 KBC의 IP-CHINA DESK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Kotra 베이징 KBC 센터장 郭福墀

목 차

제1장 특허제도 1

1 특허의 종류 1
2 특허요건 1
3 특허출원 4
4 심사절차 6
5 무효선고 12
6 특허권 보호 및 침해행위 14
7 특허권 침해 대응책 15

제2장 상표제도 21

1 상표의 개념 21
2 상표출원 22
3 심사절차 23
4 등록상표 취소 25
5 상표권 보호 및 침해행위 26
6 상표권 침해 대응책 28

제3장 부정경쟁방지제도 33

1 부정경쟁행위란? 33
2 부정경쟁행위 종류 33
3 부정경쟁행위자에 대한 제재 38

【첨부】

◈ 특허 출원양식 40

발명특서출원서 40
실용신안특허출원서 54
디자인특허출원서 68
특허대리위임장 84

◈ 상표 출원양식 90

상표등록출원서 90
상표대리위임장 96

◈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신구조문 대비 98

※ 본 매뉴얼은 www.ipchinadesk.com에서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1장 특허(專利)제도

1. 특허의 종류

◎ 발명특허(發明專利)

제품・방법 또는 그 개량한 것에 대한 새로운 기술방안으로 보호대상이 가장 광범위하다.

◎ 실용신안특허(實用新型專利)

제품의 형상・구조 또는 그 결합에 대한 새로운 실용적 기술방안으로 발명특허에 비하여 보호대상이 비교적 좁으며 형상 및 구조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만 보호한다.

◎ 디자인특허(外觀設計專利)

제품의 형상・도안 또는 그 결합 및 색채와 형상・도안의 결합에 의하여 만들어진 미감이 있고 공업적인 응용에 적합한 새로운 설계로서 제품에 대해서만 보호한다. 즉 디자인은 발명 및 실용신안과 달리 제품의 외형에 대한 보호로서 기술내용과 관련되지 아니한다.

2. 특허요건

◎ 발명 및 실용신안특허

출원한 기술이 발명 특허권을 수여받기 위해서는 신규성・창조성 및 실용성을 구비해야 한다.

첫째, 신규성(新穎性)이란 특허를 받기 위하여 출원한 발명이 출원일 이전에 공개되거나 사용되지 않아야 함을 말하며, 아래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신규성을 구비한 것으로 판단한다.[1)]

① 출원일 이전에 동일한 발명이나 실용신안이 국내외 출판물에 공개 발표된 적이 없어야 한다.
② 국내에서 공개적으로 사용되거나 기타 방식으로 사회에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
③ 타인이 출원한 동일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당해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특허출원 서류 중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라도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며, 해당일로부터 6개월 내에 출원할 경우,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i) 중국정부가 주관 또는 승인한 국제 박람회에 최초로 전시한 경우
ii) 규정된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에 최초로 발표한 경우
iii) 타인이 출원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내용을 누설한 경우

i) 또는 ii)의 사유로 인한 신규성 상실 예외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 시, 출원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출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전시일 또는 발표일이 기재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iii) 에 해당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출원인에게 지정기간 내에 증명서류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출원인이 출원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지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신규성 상실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특허법실시세칙 제31조)

둘째, 창조성(創造性)이란 기존의 기술보다 진보되어야 함을 말하며, 발명특허는 출원한 발명이 특출하고 비교적 높은 창조성을 구비해야 하고, 실용신안특허는 특출하고 현저함을 요구하지 아니하지만 창조성의 정도가 비교

1) 개정법 제22조는 신규성 요건을 강화하여, ①당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현존기술에 속하지 않아야 하며, ②어떤 단위 또는 개인이 동일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하여 출원일 이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출원하지 않아야 하고, ③출원일 이후 공개된 특허출원서류 또는 공고된 특허서류 중에 기재되지 않을 것을 요구 하고 있다.
여기서, 현존기술이란 출원일 이전 국내외에서 공중이 알고 있는 기술을 말한다.

적 낮은 창조성을 요구한다.

셋째, 실용성(實用性)이란 제조 또는 사용이 가능하고, 적극적인 효과발생이 가능해야 함을 말한다.

◎ 디자인특허

출원한 디자인이 특허권을 수여 받기 위해서는 출원일 이전에 국내외 출판물에 공개 발표되었거나, 국내에서 공개적으로 사용된 적이 있는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아야 하며, 타인이 먼저 취득한 합법적인 권리와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2)]

출원한 디자인도 아래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신규성을 상실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6개월 내에 출원할 경우 예외가 인정되어,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① 중국정부가 주관 또는 승인한 국제 박람회에 최초로 전시한 경우
② 규정된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에 최초로 발표한 경우
③ 타인이 출원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내용을 누설한 경우

발명 및 실용신안특허와 마찬가지로 ① 또는 ②의 사유로 인한 신규성 상실 예외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 시 출원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출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전시일 또는 발표일이 기재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출원인에게 지정기간 내에 증명서류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출원인이 출원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또는 지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신규성 상실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특허법실시세칙 제31조)

2) 개정법 제23조는 디자인에 대한 신규성 요건도 강화하여, ①특허권을 수여하는 디자인은 현존설계에 속하지 않아야 하며, 어떤 단위 또는 개인이 동일한 디자인에 대하여 출원일 이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출원하지 않아야 하고, 출원일 이후에 공고된 특허서류 중에 기재되지 않아야 하며, ②특허권을 수여하는 디자인은 현존설계 또는 현존설계의 특징적 조합과 상호 비교하여 명백한 구별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현존설계란 출원일 이전 국내외에서 공중이 알고 있는 설계를 말한다.

3. 특허출원

1) 구비서류 (각 2부 제출)

● 발명특허

- 발명특허출원서(發明專利請求書)
- 명세서(說明書, 첨부도면이 있는 경우 첨부도면 제출)
- 특허청구범위(專利要求書)
- 요약(摘要, 필요시 요약 도면 첨부)
- 조기공개 신청서(필요시)
- 위임장(대리인에게 위임시)

● 실용신안특허

- 실용신안특허출원서(實用新型專利請求書)
- 명세서(說明書) 및 명세서 첨부도면(說明書 附圖)
- 특허청구범위(權利要求書)
- 요약 및 요약첨부 도면(摘要及其摘要附圖)
- 위임장(대리인에게 위임 시)

● 디자인특허

- 디자인특허출원서(外觀設計專利請求書)
- 도면 또는 사진(圖片或者照片)
- 위임장(대리인에게 위임 시)

※ 도면이나 사진은 2부를 제출해야 하며, 사진과 도면을 혼용할 수 없다. 도면이나 사진상의 디자인에 대해 설명이 필요할 경우, 관련 설명서 2부를 제출하며, 디자인의 색체보호를 요구하려면 도면이나 사진은 컬러로 제출해야 한다.

2) 출원비용(관납요금)

◉ 발명특허

- 출원료 : 950 RMB(청구항 10항, 명세서 30페이지 기준)
- 심사청구료 : 2,500 RMB

◉ 실용신안 및 디자인특허

- 출원료 : 500 RMB(청구항 10항, 명세서 30페이지 기준)

3) 중국에 거소 또는 영업장소가 없는 외국인의 출원

중국에 계속적인 거소나 영업장소가 없는 외국인·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조직이 중국에서 발명·실용신안 및 디자인·특허를 출원하거나 기타 특허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지정한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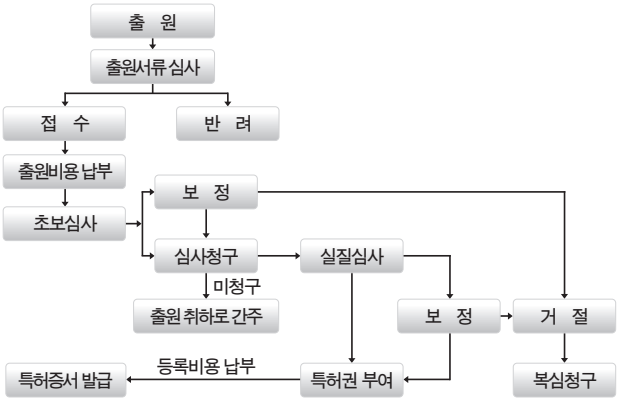
4) 우선권

외국에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제1차로 출원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디자인를 제1차로 특허출원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국에서 같은 주제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우선권의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출원인이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출원 시 서면성명(書面聲明)을 제출하고, 3개월 내에 1차로 제출한 특허출원 서류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서면성명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특허출원 서류부본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우선권을 요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심사절차

1) 발명특허



<발명특허 심사절차 흐름도>

● 초보심사(初步審查)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국가지식산권국)는 발명특허출원을 수리한 후, 이에 대한 초보심사를 실시한다. 초보심사란 발명특허출원이 특허법 규정의 출원서류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구비했는지, 또한 이러한 서류가 규정된 형식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아래 사항과 함께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 특허법 제5조(국가법률 및 공공양속 위반)·제25조(과학적 발견, 지능활동 및 규칙)의 규정에 현저하게 해당하는지 여부
- 특허법 제18조(중국내 계속적인 거소 또는 영업장소가 없는 출원인)·제19조제1항(제18조 해당자의 대리기구 위임 출원)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 특허법 제31조제1항(1발명 1특허출원)·제33조(원 출원서 및 권리요구서를 초과한 보정) 또는 특허법실시세칙 제2조제1항(발명의 정의)·제18조(명세서 작성 형식 및 내용)·제20조(권리요구서 작성) 규정에 현저하게 부합하는지 여부

초보심사 결과 발명특허출원이 상기 사항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심사의견을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지정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보정하도록 요구한다.

기한 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 그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고, 출원인의 의견진술 또는 보정 후에도 여전히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할 경우 당해 출원이 거절된다.

◎ 출원공개(公布)

발명특허출원이 초보심사를 거쳐 특허법의 요구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에 공개한다. 그러나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출원에 대한 조기공개도 가능하다.

출원인은 발명특허가 공개된 후, 그 발명을 실시하는 단위 또는 개인에게 적당한 비용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공개일로부터 공고일 전까지 당해 특허출원이 특허법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이유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심사청구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3년 내에 발명특허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를 청구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출원인은 실질심사 청구 시, 출원일전 그 발명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당해 발명특허가 이미 외국에 출원된 적이 있는 경우 출원인에게 지정된 기간 내에 당해 국가가 그 출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검색을 진행한 자료 또는 심사결과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가 없이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출원인이 정당한 이유로 인하여 검색자료 또는 심사결과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성명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 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실질심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실질심사를 청구한 출원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체적으로 발명특허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자체적으로 실질심사를 진행할 경우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출원에 대한 보정

출원인은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발명특허출원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으나, 원 명세서 및 권리요구서에 기재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실질심사 청구 시, 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발송한 발명특허출원이 실질심사 단계에 진입한다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보정할 수 있다.
-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발송한 심사의견통지서를 받은 후 특허출원서류에 대하여 보정을 할 경우, 통지서의 요구에 따라 보정해야 한다.

● 거절이유 통지 및 거절결정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출원에 대한 실질심사 결과 특허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경우, 출원인에게 지정기간 내에 의견진술을 요구하거나 그 출원에 대하여 보정하도록 통지한다.

출원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기간 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 그 발명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거절이유(특허법실시세칙 제53조)>

- 발명의 정의(제품・방법 또는 그 개량에 대하여 제출된 새로운 기술방안)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특허법실시세칙 제2조제1항)
- 출원발명이 법률 또는 공공질서에 위반되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특허법 제5조)
- 특허권을 허가받을 수 없는 과학적 발견, 지능 활동 및 규칙 등의 출원인 경우(특허법 제25조)

- 특허요건(신규성, 실용성, 창조성)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와 선원규정에 위반되는 경우(특허법 제22조, 특허법 제9조 및 특허법실시세칙 제13조 제1항)
- 명세서, 권리청구범위의 기재가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특허법 제26조제3항 및 제4항, 특허법실시세칙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 '1 특허출원 요건'에 위배되는 경우(특허법 제31조제1항)
- 원출원명세서와 권리요구서에 기재된 범위를 초과하여 보정한 경우 또는 분할된 특허출원이 원출원의 공개범위를 초과한 경우(특허법 제33조, 특허법실시세칙 제43조제1항)
-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 후에도 여전히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특허법 제38조)

◉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출원인이 거절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허복심위원회(專利複審委員會)에 복심(複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허복심위원회는 복심한 후에 결정하여 출원인에게 통보한다.

출원인이 특허복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법원(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에 불복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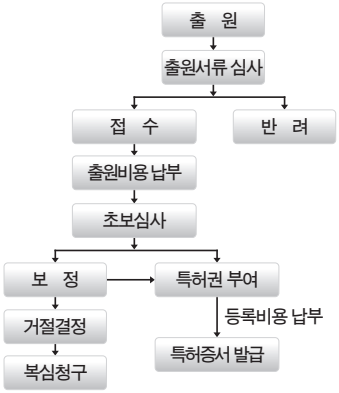
◉ 등록결정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실질심사를 거쳐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발명특허권 수여를 결정하고, 출원인에게 발명특허권을 수여 통지를 발송한다.

출원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출원인이 기한 내에 등록수속을 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 특허증서를 발급하고 공고하며, 기한 내에 등록수속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허권 취득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실용신안 및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특허 심사절차 흐름도>

● 초보심사(**初步審查**)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실용신안 및 디자인특허출원을 수리한 후, 이에 대한 초보심사를 실시한다. 초보심사란 실용신안 및 디자인특허출원이 특허법 규정의 서류와 기타 필요한 서류 구비여부와 이들 서류가 규정된 형식에 부합여부 및 아래 사항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실용신안특허(특허법실시세칙 제44조)>

- 특허법 제5조(국가법률 및 공공양속 위반)·제25조(과학적 발견, 지능활동 및 규칙)의 규정에 현저하게 속하는 지 여부
- 특허법 제18조(중국내 계속적인 거소 또는 영업장소가 없는 출원인)·제19조제1항(제18조 해당자의 대리기구 위탁 출원)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지 여부
- 특허법 제26조제3항 또는 제4항(명세서 또는 권리요구서의 작성 방법)·제31조제1항(1발명 1특허출원)·제33조(원출원서 및 권리요구서를 초과한 보정) 또는 특허법실시세칙 제2조제2항(실용신안의 정의)·제13조제

1항(1출원 1특허)·제18조(명세서 작성 형식 및 내용) 내지 제23조(명세서·도면·권리요구서 작성 방법)·제43조제1항(분할출원의 원출원일 유지 및 공개범위) 규정에 현저하게 부합하지 아니하는 지 여부
- 특허법 제9조(선출원 규정)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는 지 여부

<디자인특허(특허법실시세칙 제44조)>

- 특허법 제5조(국가법률 및 공공양속 위반) 규정에 현저하게 속하는 지 여부
- 특허법 제18조(중국내 계속적인 거소 또는 영업장소가 없는 출원인)·제19조제1항(제18조 해당자의 대리기구 위탁 출원)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지 여부
- 특허법 제31조제2항(1물품 1디자인특허출원)·제33조(원출원서 및 권리요구서를 초과한 보정) 또는 특허법실시세칙 제2조제3항(디자인의 정의)·제13조제1항(1출원 1특허)·제43조제1항(분할출원의 원출원일 유지 및 공개범위) 규정에 현저하게 부합하지 아니하는 지 여부
- 특허법 제9조(선출원 규정)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는 지 여부

◎ 출원에 대한 보정

출원인은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특허 출원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으나, 실용신안특허출원은 원 명세서 및 권리요구서에 기재된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디자인특허출원 서류에 대한 보정은 원 도면 또는 사진자료에 표시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특허 출원에 대한 보정을 제출할 수 있다.
-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발송한 심사의견통지서를 받은 후 출원서류에 대하여 보정을 할 경우, 통지서의 요구에 따라 보정해야 한다.

◎ 거절이유 통지 및 거절결정

초보심사 결과,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특허 출원이 전술한 초보심사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심사의견을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지정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보정하도록 요구한다.

기한 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 그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고, 출원인의 의견진술 또는 보정 후에도 여전히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할 경우 당해 출원을 거절한다.

●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출원인이 거절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허복심위원회(專利複審委員會)에 복심(複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허복심위원회는 복심한 후에 결정하여 출원인에게 통보한다.

출원인이 특허복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법원(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에 불복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 등록결정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초보심사를 거쳐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특허권의 수여를 결정하고, 출원인에게 특허권을 수여하는 통지를 발송한다.

출원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출원인이 기한 내에 등록수속을 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 증서를 발급하고 공고하며, 만약 기한 내에 등록수속을 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권 취득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5. 무효선고

1) 무효선고 청구 및 결정

누구든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특허권 수여공고 일로부터 당해 특허권의 수여가 특허법의 관련규정과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허복심위원회에 무효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특허복심위원회는 특허권 무효선고의 청구에 대하여 즉시 심사・결정하고, 청구인과 특허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무효사유(특허법실시세칙 제64조)>

- 법률 또는 공공질서에 위반되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출원이 특허된 경우(특허법 제5조)
- 선원규정에 위반하여 특허된 경우(특허법 제9조, 특허법실시세칙 제13조제1항)
- 특허요건(新穎性, 實用性, 創造性)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특허법 제22조)
- 허가받은 디자인이 국외의 출판물에 이미 공개 발표되었거나, 국내에서 사용된 디자인과 유사하고, 먼저 취득한 타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상호 충돌할 경우(특허법 제23조)
- 특허권을 수여받을 수 없는 발명창조에 특허권이 허가된 경우(특허법 제25조)
- 명세서 또는 권리요구서의 기재가 명료하지 아니할 경우(특허법 제26조 제3항 및 제4항, 특허법실시세칙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 기존 명세서와 권리요구서에 기재된 범위를 초과하여 보정한 발명에 특허권이 허가된 경우(특허법 제33조)
- 원도면 또는 사진에 표시된 범위를 초과하여 보정한 디자인에 대하여 특허권이 허여된 경우(특허법 제33조)
- 발명·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정의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특허법실시세칙 제2조)

<무효선고 결정의 종류>

- 특허권 유효(維持專利權有效)
- 특허권 무효(宣告專利權無效)
- 특허권 부분무효(宣告專利權部分無效)

2) 무효선고 결정에 대한 불복

당사자가 특허복심위원회의 특허권 무효 또는 유지 선고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에 불복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무효선고청구절차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3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한다.

3) 무효선고 결정의 효력

무효선고가 결정된 특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특허권 무효선고 전에 법원이 결정하고 집행한 특허권 침해의 판결 및 재정, 이미 이행 또는 강제 집행한 특허침해분쟁의 처리결정 및 이미 이행한 특허실시허가계약과 특허권양도계약에 대하여 소급력이 없다.

6. 특허권 보호 및 침해행위

1) 효력 및 존속기간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권리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발명특허권 20년, 실용신안 및 디자인특허권은 10년이다.

2) 보호범위

발명 및 실용신안특허권의 보호범위는 권리요구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명세서와 첨부 도면은 권리요구서를 해석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3)]

디자인특허권의 보호범위는 도면 또는 사진에 표시된 당해 디자인 특허제품을 기준으로 한다.[4)]

3) 침해행위

● 발명 및 실용신안 특허권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생산 또는 경영을 목적으로 특허제품을 제조・사용・판매를 위한 전시・판매・수입하는 행위, 또는 그 특허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당해 특허방법에 의하여 직접 획득한 제품을 사용・판매・수입・판매를 위한 전시행위는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3) 개정법 제59조제1항은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권의 보호범위는 그 권리요구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명세서 및 첨부 도면은 권리요구의 내용을 해석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개정법 제59제제2항은 디자인특허권의 보호범위는 도면 또는 사진에 표시된 당해 물품의 디자인을 기준으로 하고, 간단한 설명은 도면 또는 사진에 표시된 당해 물품의 디자인을 해석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디자인 특허권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산 또는 경영을 목적으로 디자인특허 제품을 제조・판매・수입하는 행위는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7. 특허권 침해 대응책

1) 협상에 의한 해결

특허권 침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는 협상으로 해결한다. 협상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소를 제기 하거나 특허업무담당부서(지방 지식산권국)에 처리를 청구할 수 있다.

2) 민사적 구제

◎ 손해배상청구

중국 민법통칙(民法通則) 제118조는 '공민과 법인은 저작권, 특허권, 상표전용권, 발견권, 발명권 및 기타 과학기술성과권이 절도・개변・모방 등의 침해를 받았을 경우, 침해정지, 폐기나 제거,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따라 특허권 침해해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 요건으로는 행위자의 고의[5]에 의한 침해행위로 인하여 특허권자의 손해가 발생해야 하며, 침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특허권 침해분쟁이 신제품 제조방법의 발명특허에 관한 것인 경우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그 제품의 제조방법이 특허방법과 동일하지 않다는 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받은 손해 또는 침해자가 침해

5) 생산경영의 목적을 위한 사용 또는 판매가 특허권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제조・판매된 특허제품 또는 특허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된 제품임을 알지 못하였지만, 그 제품의 합법적인 출처를 증명할 수 있으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특허법 제63조제2항)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의하여 확정하되, 특허권자의 손해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의 확정이 곤란한 경우, 특허허가사용료의 배수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6)]

◉ 특허권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타인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실시하고 있거나 또는 곧 실시하려고 하는 증거 및 증명이 있고, 만약 즉시에 제지하지 아니하면 그의 합법적 권익에 보충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침해행위정지 명령 및 재산보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신청서 제출 시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법원은 신청을 거절해야 한다.

법원은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침해정지명령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48시간 내에 서면으로 결정해야 하고, 침해행위를 정지할 것을 결정한 경우, 즉시 집행해야 한다.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의 침해행위정지 조치 후 15일 내에 소송을 청구하여야 하고, 소송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 법원은 결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법원은 소송청구 전 특허권 침해행위중지 조치를 집행할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74조[7)] 규정을 참조하여 증거보전조치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92조 및 제93조 규정에 의한 재산보전조치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재산보전조치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후 48시간 내에 결정해야 하고, 재산보존조치를 결정한 경우 즉시 집행해야 하며 신청인이 재산보존조치 후 15일 내 소송을 청구하여야 하고 소송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 법원은 결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6) 개정법 제65조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특허권 침해에 대한 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받은 실제 손실에 의하여 확정하고, 실제 손실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에 의하여 확정한다. 권리자의 손실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의 확정이 곤란한 경우 당해 특허허가실시료의 배수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배상액에는 권리자가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지급한 합리적 비용도 포함한다. ②권리자의 손실・침해자가 얻은 이익 및 특허허가실시료 모두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인민법원은 특허권의 종류・침해행위의 성격 및 정도 등의 요소에 따라 1만 위엔 이상 100만 위엔 이하의 배상을 확정할 수 있다.

7) 민사소송법 제74조는 증거가 멸실될 우려가 있거나 이후 취득하기 곤란한 경우, 소송참가인은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도 자발적으로 증거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제기된 소송은 침해행위지 또는 피고 주소지의 법원이 관할한다. 원고가 침해제품 제조자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하고 판매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제조지와 판매지가 불일치할 경우 제조지의 법원에 관할권이 있고, 제조자와 판매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판매지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소송시효는 2년으로 하며,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침해행위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게 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3) 행정적 구제

◉ 청구기관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피청구인 소재지 또는 침해행위지의 특허업무관리부서에 특허권 분쟁에 대한 처리를 청구할 수 있다.

둘 이상의 특허업무관리부서가 관할권이 있는 특허권 분쟁은 당사자가 그 중 하나의 특허업무관리부서에 처리를 청구하고, 당사자가 둘 이상의 특허업무관리부서에 처리를 청구한 경우 먼저 청구를 수리한 특허업무관리부서가 처리한다.

◉ 침해행위에 대한 처리[8)]

특허권 침해분쟁이 신제품 제조방법의 발명특허에 관한 것인 경우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당해 제품의 제조방법이 특허방법과 동일하지 않다는 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업무관리부서는 침해행위가 성립한다고 인정되면 침해행위의 즉시정지를 명령하고, 침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8) 개정법 제64조는 침해행위를 처리하는 부서의 권한을 신설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이미 취득한 증거에 근거하여 특허도용 혐의행위에 대하여 조사·처리할 경우, 관련 당사자를 심문하고 위법행위 혐의와 관련된 상황의 조사, 당사자의 위법행위 혐의 장소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 위법행위 혐의와 관련된 계약·영수증·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의 조사·열람 및 복사, 위법행위 혐의와 관련된 제품을 검사할 수 있으며, 특허도용 제품에 대한 증거 및 증명이 있는 경우 조사·봉인 및 압류를 할 수 있다. ②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전항 규정의 직권을 행사할 경우, 당사자는 협조 및 협력해야 하며 거절 또는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당사자가 특허업무관리부서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처리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중화인민공화국행정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불복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침해자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소를 제기하지도 아니하고 침해행위도 정지하지 아니할 경우, 특허업무관리부서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침해행위를 처리하는 특허업무관리부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응하여 특허권 침해에 대한 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에 근거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형사적 구제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여 상황이 심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徒刑) 또는 구역(拘役)[9], 벌금(罰金)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5) 과태료

◉ 타인의 특허도용행위(假冒他人專利)

특허법에 의한 민사책임 외에 특허업무관리부서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공고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3배 이내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5만위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구체적 타인 특허도용행위>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판매된 제품・제품의 포장에 타인의 특허번호를 표기하는 행위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 또는 기타 홍보자료 중 타인의 특허번호를 사용하여 공중으로 하여금 관련된 기술이 타인의 특허기술로 오인하도록 하는 행위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 중 타인의 특허번호를 사용하여, 공중으로 하여금 계약에 관련된 기술이 타인의 특허기술로 오인하도록 하는 행위

9) 중국 형법 제42조 내지 제44조에 규정된 형벌로서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신체 구금형을 말한다.

- 타인의 특허증서, 특허서류, 또는 특허출원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 허위의 특허 표시행위(冒充專利)

비특허제품을 특허제품으로 하거나 비특허방법을 특허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 특허업무관리부서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공고하며, 5만위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2장 상표(商標)제도

1. 상표(商標)의 개념

생산・경영자가 자신이 생산・경영하는 상품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와 기타 생산・경영자의 상품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종의 표지를 말한다.

상표국의 심사를 거쳐 등록된 상표는 등록상표(注冊商標)이며, 여기에는 상품상표・서비스상표・단체표장・증명상표 등을 포함한다.

◉ 상품상표(商品商標)

타인이 생산 또는 경영하는 상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상품 또는 그 포장이나 용기에 사용하는 표지를 말한다.

◉ 서비스상표(服務商標)

타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지를 말한다.

◉ 단체표장(集體商標)

단체 협회 또는 기타 조직의 명의로 등록하여 당해 조직 구성원의 상사 활동에 제공되고, 사용자는 당해 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표시하는 표지를 말한다.

◉ 증명상표(證明商標)

당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원산지・원료・제조방법・품질 또는 기타 특정품질을 증명하는데 사용되는 표지이다.

2. 상표출원

1) 구비서류 (각 2부 제출)

- 출원서 1부
- 상표견본 5매(색채를 지정한 경우 색채견본 5매, 흑백견본 1매)
- 위임장(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 신분증명서(법인증명 혹은 여권) 등의 서류를 제출

2) 비용(관납요금)

- 출원료 : 1,000 RMB(1개류의 10개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 기준)

3) 중국에 거소 또는 영업장소가 없는 외국인의 출원

중국 내에서 계속적인 거소 또는 영업장소가 없는 외국인 및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출원하고 기타 상표업무를 처리할 경우, 중국정부가 인가한 상표대리자격을 구비한 대리기구에 위탁하여야 한다.

4) 우선권

상표등록출원인이 외국에 제1차로 상표등록을 출원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중국에 동일한 상품에 동일 상표를 출원할 경우, 당해 국가와 중국이 체결한 협약 또는 공통 참가한 국제조약, 또는 상호 승인한 우선권 원칙에 의하여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출원인이 우선권을 요구할 경우 상표등록출원서를 제출할 때 서면성명서를 제출하고 3개월 내에 제1차로 제출한 상표등록출원 서류의 부본을 제출해야 하며, 서면성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간을 경과하여 상표등록출원 서류의 부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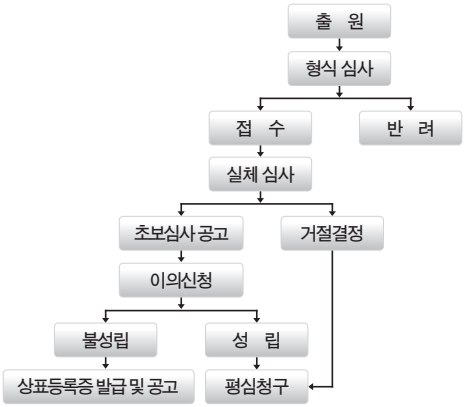
5) 전시회 출품

상표가 중국정부가 주최하거나 승인한 국제전시회에 출품한 상품에 먼저 사용된 경우, 당해 상품의 전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당해 상표의 등록출원인은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출원인이 전시회 출품으로 인한 우선권을 요구할 경우 상표등록출원을 제출할 때 서면성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3개월 내에 그 상품을 전시한 전시회의 명칭, 전시상품에 사용한 당해 상표의 증거, 전시일 등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면성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간을 경과하여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3. 심사절차

● 초보심사・결정 및 공고(初步審定和公告)



<상표 심사절차 흐름도>

초보심사・결정(初步審定)이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표국이 상표법의 관련 규정에 의한 심사를 말하며, 형식심사와 실체심사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형식심사>

-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표국은 형식심사를 거쳐 수리하며, 수리 시 상표국은 출원서 접수일을 출원일로 확정하고 출원번호부여와 동시에 출원인에게 수리통지서를 발급한다.
- 형식심사의 대상은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조(단체표장 및 증명상표의 출원인 적격), 제4조(출원인 적격), 제5조(공동출원 규정), 제6조(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연초상표 관련 규정), 제19조 내지 제21조(상표등록출원서의 형식), 제24조(우선권 주장), 제25조(전시회 출품), 제62조(수수료)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실체심사>

- 실체심사란 상표국이 상표법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상표등록출원의 실질적 요건의 합법성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 실체심사는 절대적 거절이유에 대한 심사와 상대적 거절이유에 대한 심사로 구성하며, 그 대상은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10조 내지 제12조(상표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 상표등록의 요건, 입체상표의 등록요건), 상표법 제28조 및 제29조(선출원)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 출원상표가 상표법의 관련규정에 부합할 경우, 상표국은 공고한다.

● 초보심사·결정(初步審定)에 대한 불복

상표국은 출원상표를 거절 또는 공고하지 아니할 경우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출원인이 이에 불복할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심판(複審)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출원인의 불복심판에 대하여 결정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출원인이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에 불복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공고 및 이의신청

누구라도 공고 일로부터 3개월 내에 초보심사·결정으로 공고한 상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이의가 없을 경우 등록하고 상표등록증을 발급한 후 공고한다.

● 이의결정 및 불복

초보심사·결정으로 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가 제출된 경우, 상표국은 이의신청인과 피이의신청인이 진술하는 사실과 이유를 듣고 확인·조사한

후 결정한다.

당사자가 상표국의 이의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상표평심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상표평심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서면으로 이의신청인과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법원(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에 불복소송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상표심판절차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3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한다.

◉ 이의확정

당사자가 법정기한 내에 상표국의 결정에 대하여, 상표평심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지 않거나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상표국의 이의결정은 효력을 발생한다.

이의가 불성립할 경우 등록하여 상표등록증을 발급하여 공고하고, 이의가 성립할 경우 등록하지 아니한다.

4. 등록상표 취소

1) 상표국에 의한 취소

◉ 취소사유

- 심사과정상 흠결이 사후에 발견되어 취소(상표법 제41조제1항)
- 적절하지 않은 상표사용 행위로 인한 취소(상표법 제44조)
- 해당상표를 부착한 상품의 품질 문제로 인한 취소(상표법 제45조)

◉ 상표국의 결정에 불복

상표국의 취소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심판(復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표평심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법원(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에 불복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2) 당사자 간 분쟁에 의한 취소

◉ 취소사유

- 타인의 주지저명상표를 복제・모방 또는 번역하여 등록한 경우
-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자의 상표를 무단으로 등록한 경우
- 상표 중에 상품의 지리표지가 있어 공중의 오인을 초래할 경우
- 타인의 현존하는 상호권・저작권・디자인특허권・성명권・초상권 등의 선(先)권리에 피해를 주는 경우
-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일정한 영향이 있는 상표를 선 등록한 상표
- 기타 등록상표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 청구권자 취소청구의 시기

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상표등록일로부터 5년 내(단, 악의로 등록받은 경우 주지저명상표권자는 5년의 시간제한을 받지 않음) 상표평심위원회에 당해 상표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시의 소송청구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법원(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에 불복소송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절차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3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한다.

5. 상표권 보호 및 침해행위

◉ 상표권의 효력 및 존속기간

등록상표권은 출원 및 심사를 거쳐 등록된 상표와 사용을 지정한 상품에 한정된다.

등록상표 중에 포함되어 있는 당해 상품의 보통명칭(通用名稱)・도형(圖形)・형식(型號), 또는 상품을 직접 표시하는 품질・주요원료・기능・용도・중량・수량・기타 특징, 또는 상표에 포함되어 있는 지명에 대해서 상표권자는 타인의 정당한 사용을 금지할 권리가 없다.

등록상표권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심사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계산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사용이 필요한 경우 기간만료 6개월 이내에 연장등록을 출원해야 한다.

◎ 상표권 침해행위

- 상표권자의 허가를 얻지 않고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 표지를 위조(僞造) 또는 허가받지 아니하고 제조(擅自制造)하거나, 위조 또는 허가받지 않고 제조한 등록상표 표지를 판매하는 행위
- 등록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구매한 후,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상품에 부착된 상표를 떼어내고, 자기의 상표를 부착하여 시장에 유통시키는 행위
-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자 도형을 상품의 명칭 또는 표장으로 사용하여 오인을 유발하는 행위
- 고의로 타인의 상표권 침해를 위하여 창고저장・운송・우편우송・은닉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자를 기업의 상호로서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돌출되게 사용하여, 용이하게 관련 공중의 오인을 유발하는 행위
- 타인의 등록된 주지저명상표 또는 그 상표의 주요부분을 복제・모방・번역하여 이종 또는 비 유사 상품에 상표로서 사용하여 공중의 오인을 유발하고, 당해 주지저명 상표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자를 도메인 네임으로 등록하고 당해 도메인 네임을 통하여 관련 상품의 전자거래행위를 하여, 관련공중으로 하여금 용이하게 오인을 유발하는 행위

6.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

1) 협상에 의한 해결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협상으로 해결하고, 협상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처리를 청구할 수 있다.

2) 민사적 구제

◉ 손해배상청구

중국 민법통칙(民法通則) 제118조는 '공민과 법인은 저작권, 특허권, 상표전용권, 발견권, 발명권 및 기타 과학기술성과권이 절도・개변・모방 등의 침해를 받았을 경우, 침해정지, 폐기제거,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따라 특허권 침해해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요건으로는 행위자의 고의(침해자에 대한 편의제공 행위)에 의한 침해행위로 인하여 특허권자의 손해가 발생해야 하며, 침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손해배상액은 침해자가 침해 기간 동안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피침해자가 피침해 기간 동안 침해행위로 인하여 받은 손해로 확정하고, 피침해자가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도 포함된다.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피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확정하기 곤란할 경우, 법원은 침해행위의 상황에 근거하여 50만위엔 이하의 손해배상 판결이 가능하다.

등록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인 것을 모르고 한 판매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당해 상품을 취득했고, 상품제공자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없다.

◉ 침해물품 수거 및 과태료 부과 등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침해자에게 침해중지・방해제거・위험해소・손해배상・영향제거 등 민사책임을 판결할 수 있으며, 과태료를 부과하고 침해상품・위조된 상표표지 및 침해상품을 생산하는데 전문적으로 사

용된 재료・공구・설비 등의 재물에 대한 몰수 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동일한 등록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이미 행정처벌을 했을 경우, 법원은 다시 민사적 제재를 할 수 없다.

◎ 상표권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타인이 당해 등록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진행 중이거나 곧 진행할 것이라는 증거가 있고, 만약 이를 즉시에 제지하지 않을 경우, 장래에 그의 합법적인 권익에 보충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에 침해행위중지 명령 및 재산보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증거가 소멸할 수 있거나 이후 증거를 취득하기 곤란할 경우 법원에 증거보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48시간 내에 결정을 해야 하며, 보전조치를 결정한 경우 즉시 집행해야 한다.

법원은 신청인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고,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법원이 증거보전조치를 취한 후 신청인은 15일 이내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보전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 관할법원

상표권 침해사건에 대한 소송관할지는 상표권 침해행위의 실시지, 침해상품의 보관지 또는 조사・봉인・압수지 또는 피고 주소지의 법원이 관할한다.

여기서 '침해상품 보관지'란 침해상품을 대량 또는 항상 보관・은닉하는 소재지를 말하고, '조사・봉인・압수지'란 세관・공상 등 행정기관이 법에 의하여 침해상품을 조사・봉인 또는 압수한 소재지를 말한다.

◎ 시효

상표권 침해소송에 있어 소송시효는 2년이며, 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침해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계산하고,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20년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2년을 초과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침해행위가 소 제기 시 계속 존재하고 당해 등록상표의 존속기간 내인 경우 법원은 피

고에게 침해행위 중지를 판결해야 한다. 이 경우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권리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앞으로 2년간을 추산하여 계산한다.

3) 행정적 구제

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침해행위지 소재 현급(縣級)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록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리를 청구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침해행위에 대한 처리 시 침해행위의 성립이 인정될 경우 침해행위의 즉시 중지를 명령하고 권리를 침해한 상품과 침해상품의 제조 또는 등록상표의 표지를 위조하는데 전문적으로 사용된 도구를 몰수 또는 폐기 처분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당사자가 처리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처리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침해자가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표권 침해에 대한 배상금액을 조정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누구라도 침해발생지 현(구)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서에 투서 또는 제보할 수 있다.

4) 형사적 구제

◎ 등록상표침해죄(假冒注冊商標罪)

상표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동종 상품에 당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 범죄를 구성할 경우, 침해행위의 손해를 배상하는 외에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소추한다. (상표법 제59조제1항)

상표권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동종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 침해정도가 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徒刑) 또는 구역(拘役)[10]에 처하고 벌금(罰金)을 병과하거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특히 심각할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을 병과한다. (형법 제213조)

◎ 등록상표를 위조한 상품 판매죄(銷售假冒注冊商標的商品罪)

위조된 등록상표의 상품인 것을 알고 한 판매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침해행위의 손해를 배상하는 외에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소추한다. (상표법 제59조제3항)

등록상표를 도용한 상품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면서 판매하여 그 판매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역[10]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에 처한다. 판매금액이 아주 큰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을 병과한다. (형법 제214조)

◎ 등록상표표지의 불법 제조・판매죄(非法制造、銷售非法制造的注冊商標標識罪)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임의로 제조하거나 위조・임의로 제조한 상표를 판매하여 범죄를 구성할 경우, 침해행위의 손해를 배상하는 외에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소추한다. (상표법 제59조제2항)

타인의 등록상표 표지를 위조 또는 무단으로 제조하거나 위조 또는 무단으로 제조한 등록상표를 판매하여 침해가 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구역 또는 관제(管制)[11]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에 처한다. 침해정도가 특별히 심할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을 병과한다. (형법 제215조)

10) 중국 형법 제42조 내지 제44조에 규정된 형벌로서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신체 구금형을 말한다.
11) 중국 형법 제38조 내지 제41조에 규정된 형벌로서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일정한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을 말한다.

제3장 부정경쟁방지(反不正競爭)

1. 부정경쟁행위(反不正競爭)란?

경영자(영업주체)가 시장에서 거래를 함에 있어 공정한 거래관행에 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경영자가 시장에서 행한 행위 중 어떤 행위가 공정한 경쟁행위에 반하는 지는 각국의 경제 및 정치적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다.

2. 부정경쟁행위 종류

1) 혼동초래행위

◉ 개념

경영자가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품 또는 영업을 그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과 오인 또는 혼동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구체적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 저명상품 특유의 명칭・포장・표장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또는 저명상품과 유사한 명칭・포장・표장을 사용하여 타인의 저명상품과 서로 혼동되게 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당해 저명상품인 것처럼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 타인의 기업명칭 또는 성명을 임의로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인 것처럼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2) 오인유발행위

● 개념

경영자가 상품에 품질 또는 원산지를 사칭 또는 위조하거나, 광고등 기타의 방법으로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하여 오인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행위는 혼동초래행위와 마찬가지로 허위의 수단을 사용하지만 특정 경업자의 영업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라, 허위 또는 품질을 기만하는 수단을 사용하여 구매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이다.

● 구체적 행위

- 상품에 인증표지(認證標志) 또는 유명우수품질표지(名優標志)등 품질표지를 위조하거나 사칭하는 행위
- 원산지를 위조하는 행위
- 상품의 품질에 오인을 유발하는 허위의 표시행위
- 광고 또는 기타 방법을 이용하여 상품의 품질・제조성분・성능・용도・생산자・유효기간・산지 등에 대하여 오인을 유발하는 허위의 선전행위

3) 영업회뢰(賄賂)행위

● 개념

경영자가 상품을 판매 또는 구매하기 위하여 재물 또는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방 기관 또는 개인을 매수하는 행위를 말하며, 회뢰(賄賂)의 개념에는 뇌물공여행위와 뇌물수수행위를 포함한다.

● 구체적 행위

-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리베이트(回扣)의 제공 및 수수행위
-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가격할인(打折) 및 중개수수료(傭金)의 지급・수수
-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 시,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 상품거래 중 영업 관례의 범위를 벗어나는 현금 또는 물품을 증정하는 행위

4) 영업비밀 침해행위

◉ 영업비밀 개념

영업비밀이란 공중에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권리자에게 경제이익을 주며, 실용성을 구비하고, 그 권리자가 비밀조치를 취한 기술정보와 경영정보를 말한다.

◉ 영업비밀 침해행위

-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 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 비밀을 취득한 이후, 부정공개・사용행위
- 정당하게 영업 비밀을 취득한 후, 부정공개・사용 또는 사용 허락행위
-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취득・사용・공개행위

5) 경쟁제한행위

◉ 개념

경영자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또는 규모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경쟁상대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 또는 배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 구체적 행위

- 공용기업(公用企業)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독점적 지위를 향유하는 경영자가 기타 경영자의 공평한 경쟁행위를 배제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그가 지정한 경영자의 상품을 구입하도록 한정하는 행위
- 정부 및 그 소속기관이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그가 지정한 경영자의 상품을 구입하도록 한정하거나 기타 경영자의 정당한 경영활동을 제한하는 행위 및 외지(外地)상품이 본지(本地)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거나 본지(本地)상품이 외지(外地)시장으로 나가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 경영자가 법률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경쟁상대를 배제할 목적으로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 경영자가 구매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품을 끼워 팔거나 또는 기타 불합리한 조건을 부가하여 판매하는 행위

6) 경품판매(有奖销售)행위

● 개념

경영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자에게 당해 상품 또는 서비스에 부수하여 물품·금전 또는 기타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구체적 행위

- 거짓의 경품 또는 고의로 경품 당첨자를 내정하는 수단을 사용하는 경품판매 행위
- 경품판매 수단을 이용하여 질이 낮은 상품을 고가로 판매하는 행위
- 추첨식 경품판매에 있어 최고 경품금액이 5,000위안 이상을 초과하는 행위

7) 영업비방행위

● 개념

경영자가 고의로 경업자의 영업 또는 상품에 대한 허위 사실을 날조·유포하여 영업신용(商業信譽)과 상품명성(商品聲譽)을 훼손 또는 평가절하 시켜 시장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 구체적 행위

- 공개발송 편지·새 소식 발표회·대비성 광고·성명성 광고 등을 통하여 경쟁상대의 영업신용 및 상품명성을 훼손하거나 평가절하 하는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는 행위
- 고객 또는 소비자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경쟁상대의 영업신용 및 상품명성을 훼손하거나 평가절하하는 행위
- 상품설명서를 이용하여 자기 회사에서 생산·판매하는 제품을 품질이 좋다고 하면서 경쟁자가 생산·판매하는 동종제품에 대하여 평가 절하하는 행위

- 타인으로 하여금 경쟁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품질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짓 소문을 만들어 일반 공중에게 전파하도록 하여 경쟁자의 상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동종의 자기 상품에 대한 판매 증대를 도모하는 행위
- 사람들을 동원하여 고객 또는 소비자의 명의로 감독 또는 관리기관에 경쟁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질이 나쁘다는 것과 또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했다는 허위 사실을 투서하게 하여 영업명성을 훼손하는 행위

8) 입찰담합행위

◉ 개념

입찰공고자와 응찰자 또는 응찰자 간에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담합하여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입찰자의 이익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 구체적 행위

- 입찰자들이 서로 담합하여 입찰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
- 입찰자들이 서로 담합하여 입찰과정 중 돌아가면서 고가 또는 저가로 낙찰되게 하는 행위
- 입찰자들이 먼저 내부적으로 가격경쟁을 진행하여 낙찰자를 내정한 후,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행위
- 입찰자들의 기타 입찰 담합행위
- 발주자가 입찰서를 공개 개봉하기 전에 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상황을 기타 입찰자들에게 알리거나 입찰자가 입찰서를 바꾸는 것에 협조하여 입찰가격을 수정하는 행위
- 발주자가 입찰자에게 입찰최저가격을 누설하는 행위
- 입찰자와 발주자가 입찰발주 및 입찰 시 최저가격자 또는 높은 입찰가격을 협상하고, 낙찰 후 입찰자와 발주자에게 추가 보상을 하는 행위
- 발주자가 낙찰자를 미리 내정하고, 낙찰자 확정 시 이에 따라 선택하는 행위
- 발주자와 입찰자들 간에 기타 입찰발주 및 입찰 담합을 하는 행위

3. 부정경쟁행위자에 대한 제재

1) 손해배상청구

경영자가 부정경쟁방지법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경영자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경영자'란 상품경영 또는 영리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법인・기타 경제조직 및 개인을 말한다.

손해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침해자가 침해기간 동안 침해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윤을 배상액으로 하고, 침해받은 경영자가 침해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합리적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민법통칙 제134조 규정의 침해중지・방해제거・위험해소・영향제거 등 민사책임을 판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과태료를 결정할 수 있다.

부정경쟁행위 사건의 제1심은 부정경쟁행위의 실시지, 침해상품의 보관지 또는 조사・봉인・압수지, 피고 주소지의 중급이상 법원이 관할한다.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침해소송의 시효는 2년이며, 부정경쟁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계산한다. 부정경쟁행위가 있는 날로 부터 20년이 경과한 경우, 법원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2) 행정청에 의한 처분

각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개별적 행정구제제도가 존재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부정경쟁행위를 처리하는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부정경쟁행위의 종류에 따라 부정경쟁행위자에게 위법행위 중지명령 및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몰수 또는 폐기처분 등을 명할 수 있다.

3) 형사처벌

모든 부정경쟁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영업비밀 침해행위 및 영업회뢰행위 등 몇 개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첨 부

발명특허출원서

뒷면의 '기재시 주의사항'을 참조하여 정확히 기재해 주십시오

아래 내용은 특허국에서 기재
① 출원번호 (발명)
②분할 제출일
③ 출원일
④ 비용감면 심사
⑤등록번호

⑥ 발명 명칭					
⑦ 발명자					
⑧ 출원인	제1서명 출원인	성명 또는 명칭			
		기관코드 또는 개인신분증번호			
		국적 · 거주국가 또는 지역			전 화
		주소	우편번호	성, 자치구, 직할시	시 (현)
			도시 (향), 거리, 번지수		
	제2출원인	성명 또는 명칭			
		국적 · 거주국가 또는 지방			전 화
		우편번호		주 소	
	제3출원인	성명 또는 명칭			
		국적 또는 거주국가 또는 지방			전 화
		우편번호		주 소	
⑨연락인		성 명			전 화
		우편번호		주 소	

⑩ 제1서명 출원인이 아닌 자를 대표로 확정하는 성명 : 제____서명 출원인을 대표인으로 성명함.

⑪ 대리인	대리기구	명 칭			코 드
		우편번호		전 화	
		주 소			
	대리인1	성 명		대리인2	성 명
		업무증번호			업무증번호
		전 화			전 화

⑫분할출원	원출원번호 :	대응하는 분할출원번호 :	원출원일 : 년 월 일

发明专利请求书

请按照本表背面“填表注意事项”正确填写本表各栏

此框内容由专利局填写
① 申请号　　（发明）
②分案 提交日
③ 申请日
④ 费减 审批
⑤ 挂号号码

⑥ 发明名称					
⑦ 发明人					
⑧ 申请人	第一署名申请人	姓名或名称			
		单位代码或个人身份证号			
		国籍或居所地国家或地区			电　话
		地址	邮政编码	省、自治区、直辖市名称	市（县）名　　称
			城区（乡）、街道、门牌号		
	第二申请人	姓名或名称			
		国籍或居所地国家或地区			电　话
		邮政编码		地　址	
	第三申请人	姓名或名称			
		国籍或居所地国家或地区			电　话
		邮政编码		地　址	
⑨联系人		姓　　名			电　话
		邮政编码		地　址	
⑩ 确定非第一署名申请人为代表人声明		特声明第____署名申请人为申请人的代表人			
⑪ 代理	代理机构	名　　称			代　码
		邮政编码		电　话	
		地　　址			
	代理人1	姓　　名		代理人2	姓　　名
		工作证号			工作证号
		电　　话			电　　话
⑫分案申请		原申请号：	针对的分案申请号：		原申请日：　　年　　月　　日

발명특허출원서

⑬ 발명 명칭			
⑭ 생물재료 샘플보존	보존기관	주 소	
	보존일자 년 월 일	보존번호	분류명
	동 출원관련 생물재료샘플 보존내용은 명세서 제____쪽에 있음		

⑮ 우선권요청성명	선 출원 국가또는지역	선 출원일	선 출원번호	⑯ 신규성 예외 상실 성명	☐ 중국정부에서 주최 및 승인 한 국제전람회에 처음으로 전시 ☐ 규정된 학술회의 또는 기술 회의에서 처음으로 발표 ☐ 타인이 출원인 동의 없이 내용 유출
				⑰ 보안청구	☐ 동 특허출원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이 있기에 비밀보장을 청구함 ☐ 비밀보장 증명자료 제출 여부

⑱ 출원서류 목록

1.출원서	부	한부	쪽
2.명세서 요약	부	한부	쪽
3.요약 첨부도면	부	한부	쪽
4.권리요구서	부	한부	쪽
5.명세서	부	한부	쪽
(번호표	부	한부	쪽)
6.명세서 도면	부	한부	쪽

권리요구 항목 수 개

⑲ 첨부서류 목록

☐ 비용감면청구서	부	한부	쪽
☐ 비용감면청구증명	부	한부	쪽
☐ 사전공개성명	부	한부	쪽
☐ 실질심사청구서	부	한부	쪽
☐ 실질심사참고자료	부	한부	쪽
☐ 양도증명	부	한부	쪽
☐ 특허대리위임장	부	한부	쪽
☐ 선 출원서류사본	부수	총	쪽
☐ 선 출원서류사본첫장번역문	부	한부	쪽
☐ 원출원서류사본	부	한부	쪽

☐ 뉴클레이티드 또는 아미노산 일련표 ☐CD ☐플로피 디스크

☐ 기타 증명서류 (서류명을 정확히 표기요망)

☐

⑳ 전체출원인 또는 특허대리기구 서명날인	㉑ 서류목록에 대한 특허국 심사
년 월 일	년 월 일

发明专利请求书

<table>
<tr><td>⑬ 发名明称</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3">⑭ 生物材料样品保藏</td><td colspan="2">保藏单位</td><td colspan="3">地　址</td></tr>
<tr><td colspan="2">保藏日期　年　月　日</td><td>保藏编号</td><td colspan="2">分类命名</td></tr>
<tr><td colspan="5">本申请涉及的生物材料样品的保藏信息在说明书第 _____ 页中</td></tr>
<tr><td rowspan="2">⑮ 要求优先权声明</td><td>在先申请国别或地区</td><td>在先申请日</td><td>在先申请号</td><td>⑯ 宽限期声明不丧失新颖性</td><td>☐ 已在中国政府主办或承认的国际展览会上首次展出
☐ 已在规定的学术会议或技术会议上首次发表
☐ 他人未经申请人同意而泄露其内容</td></tr>
<tr><td></td><td></td><td></td><td>⑰ 保密请求</td><td>☐ 本专利申请可能涉及国家重大利益，请求保密处理
☐ 是否已提交保密证明材料</td></tr>
</table>

⑱ 申请文件清单

1. 请求书	份	每份	页
2. 说明书摘要	份	每份	页
3. 摘要附图	份	每份	页
4. 权利要求书	份	每份	页
5. 说明书	份	每份	页
（其中序列表	份	每份	页）
6. 说明书附图	份	每份	页

权利要求的项数　　项

⑲ 附加文件清单

- ☐ 费用减缓请求书　份　每份　页
- ☐ 费用减缓请求证明　份　每份　页
- ☐ 提前公开声明　份　每份　页
- ☐ 实质审查请求书　份　每份　页
- ☐ 实质审查参考资料　份　每份　页
- ☐ 转让证明　份　每份　页
- ☐ 专利代理委托书　份　每份　页
- ☐ 在先申请文件副本　份数　共　页
- ☐ 在先申请文件副本首页译文　份　每份　页
- ☐ 原申请文件副本　份　每份　页
- ☐ 核苷酸或氨基酸序列表　☐光盘　☐软盘
- ☐ 其他证明文件（注明文件名称）
- ☐

⑳ 全体申请人或专利代理机构签章

年　月　日

㉑ 专利局对文件清单的审核

年　月　日

11101
2006.7

발명특허출원영문정보

발명명칭	중문
	영문
출원인명칭및주소	
발명인성명	

发明专利请求书英文信息

发明名称	中文
	英文
申请人名称及地址	
发明人姓名	

작성시 주의사항

1. 발명특허 출원 시 발명특허출원서, 권리요구서, 명세서 및 명세서 요약을 제출해야 하고, 도면이 있을 경우 도면 및 도면요약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출원서류는 1건당 2부씩 제출해야 한다. (서식은 국가지식산권국 홈페이지에서 www.sipo.gov.cn에서 다운 받을 수 있음)
2. 출원서는 국가에서 발표한 중문 간체자로 기재해야 하며 글자는 검은색으로 본문을 프린트 또는 인쇄해야 하며, 외국인 성명・명칭・지명에 통일된 번역문이 없을 경우 출원서 영문정보 표에 원문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3. 출원서의 '□'는 기재자가 선택 시 사용하고, '□'뒤에 기술내용이 있는 경우, '□'에 체크해야 한다.
4. 출원서의 거주지란에 중국 주소를 기재하는 경우, 소재 지역의 우편번호, 성(자치구), 시(자치주), 구, 번지수와 전화번호 또는 성(자치구), 현(자치현), 촌(향), 번지수와 전화번호 또는 직할시, 구, 번지수와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하며, 우체국 사서함이 있을 경우 규정에 따라 우체국 사서함을 사용할 수 있다. 외국의 주소일 경우 국가, 시(현, 주)를 명확히 기재하고, 외국어로 된 상세한 주소를 첨부해야 한다.
5. 출원인이 출원료용감면을 청구하는 경우, 출원서류를 제출하는 동시에 비용감면청구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6. 구체적 기재설명

6.1 제1, 2, 3, 4, 5, 21란은 특허국에서 기재한다.

6.2 제6, 13란의 발명명칭은 간결하고 정확해야 하며, 25자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6.3 제7란의 발명자가 개인이고 2인 이상일 경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 순서로 기재해야 하며, 발명자는 특허국에 성명을 공개하지 않도록 요청을 할 수 있으나. 성명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 발명자 뒤에 '(성명비공개)'라고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6.4 제8란의 출원인이 기업 또는 단체일 경우 기업 또는 단체의 정식명칭 전체를 기재하고, 날인한 기관명칭과 일치해야 한다. 출원인이 개인일 경우, 본인의 실명을 기재해야 하고 필명 또는 기타 비공식 성명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출원인이 다수이며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하지 않을 경우, 출원서에 다른 성명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출원서에서 지정한 제1서명 출원인이 대표자가 된다. 제1서명 출원인이 기업 또는 단체일 경우 기관코드를 기재하고, 제1서명 출원인이 개인일 경우,개인신분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填表注意事项

一、申请发明专利，应当提交发明专利请求书、权利要求书、说明书、说明书摘要，有附图的应同时提交附图及摘要附图。申请文件应当一式两份。（表格可在国家知识产权局网站www.sipo.gov.cn下载）

二、本表应使用国家公布的中文简化汉字填写，表中文字应当打字或者印刷，字迹为黑色。外国人姓名、名称、地名无统一译文时，应同时在请求书英文信息表中注明原文。

三、本表中方格□供填表人选择使用，若有方格后所述内容的，应在方格内作标记。

四、本表中所有地址栏，本国的地址应包括所在地区的邮政编码，以及省（自治区）、市（自治州）、区、街道门牌号码和电话号码，或者省（自治区）、县（自治县）、镇（乡）、街道门牌号码和电话号码，或者直辖市、区、街道门牌号码和电话号码。有邮政信箱的，可以按规定使用邮政信箱。外国的地址应当注明国别、市（县、州），并附具外文详细地址。

五、申请人请求减缓申请费，应当在提交申请文件的同时提交费用减缓请求书及有关证明文件。

六、填表说明

1. 本表第1、2、3、4、5、21 栏由专利局填写。
2. 本表第6、13 栏发明名称应简短、准确，一般不得超过25个字。
3. 本表第7栏发明人应当是个人。发明人有两个以上的应先自左向右、再自上而下依次填写。发明人可以请求专利局不公布其姓名。如提出不公布姓名，应当在此栏所填写的相应发明人后面注明“（不公布姓名）”。
4. 本表第8栏申请人是单位的，应填写单位正式全称，并与所使用的公章上的单位名称一致。申请人是个人的，应填写本人真实姓名，不得使用笔名或其他非正式的姓名。申请人为多个，又未委托专利代理机构，除在请求书中另有声明以外，以请求书中指明的第一署名申请人为代表人。第一署名申请人是单位的，应填写单位代码；第一署名申请人是个人的，应填写个人身份证号码。

6.5 특허대리기구에 위임하지 않을 경우, 제9란에서 지정한 연락인은 출원인을 대신해서 특허국에서 발송한 서신의 수취인이 되며, 출원인이 기업 또는 단체이고 특허대리기구에 위임하지 않을 경우 연락인을 기재해야 한다. 기타 상황에서 연락인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고, 연락인을 한 명만 적을 수도 있으며, 연락인 기재 시 연락인의 연락주소, 우편번호 및 전화번호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출원서에 연락인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제1서명 출원인이 수취인이 되며, 출원인이 2명 이상(2명 포함)이고 출원서의 제1서명 출원인이 아닌 자를 대표인으로 서명한 경우 수취인은 동 대표자가 된다.

6.6 출원인이 지정한 대표자가 제1서명 출원인이 아닐 경우, 제10란에 확정된 대표자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대표자의 권리는 공유권리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제외하고, 전체 출원인을 대표하여 특허국에서 각종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6.7 출원인이 특허대리기구에 위임할 경우, 제11란에 국가지식산권국에 등록한 특허대리기구명칭을 기재하고 등록코드를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특허대리기구에서 지정한 대리인은 2명을 초과해서는 아니되고, 특허대리인의 업무증의 증서번호를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6.8 출원인이 분할출원을 제출한 경우 제12란을 기재해야 한다. 출원이 두 번째 분할출원일 경우 첫 분할출원의 출원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6.9 출원이 생물소재의 발명특허와 관련 있을 경우, 제14란을 기재해야 하고, 생물소재샘플 보존증명과 생존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6.10 출원인이 외국 또는 본국의 우선권을 요구할 경우 제15란을 기재해야 한다.

6.11 출원인이 신규성 상실 예외적용을 요구하는 경우, 제16란을 기재하고 출원일부터 2개월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6.12 출원인이 비밀보장을 요구할 경우, 제17란을 기재해야 한다.

6.13 출원인은 실제로 제출한 서류의 명칭, 부수, 쪽수 및 권리요구항 수를 제18,19란에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출원서는 A4용지를 기준으로 쪽수를 계산하며, 특허국은 실제 받은 서류 수에 따라 항목별로 심사한다.

6.14 출원인이 특허대리기구에 위임한 경우 제20란에 특허대리기구에 날인을 하고, 출원인이 대리기구에 위임하지 아니한 경우 제20란에 전체 출원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출원인이 기업 또는 단체일 경우, 당해 기업 또는 단체의 인장을 날인해야 한다. 출원서 2부의 출원인 또는 특허대리기구의 서명 또는 날인은 일치해야 하며 복사본이어서는 아니 된다.

6.15 발명자, 신청인, 우선권성명요구의 내용을 출원서에 전부 기재할 수 없을 경우, 특허국에서 양식으로 지정한 첨부 페이지에 연속으로 기재해야 한다.

5. 本表第9栏，未委托专利代理机构的，指定的联系人是代替申请人接收专利局所发信函的收件人，申请人是单位且没有委托专利代理机构的，应当填写联系人，其他情形下可以不填写联系人，联系人只能填写一人，填写联系人的，还需要同时填写联系人的通信地址、邮政编码和电话号码；请求书中未指明联系人的，第一署名申请人为收件人；申请人有两个以上（含两个）时，请求书中另有声明指定非第一署名申请人为代表人的，收件人为该代表人。

6. 申请人指定非第一署名申请人为代表人时，应在第10栏指明被确定的代表人。

代表人的权利：除直接涉及共有权利的手续外，代表人可以代表全体申请人办理在专利局的各种事务。

7. 本表第11栏，申请人委托专利代理机构的，还应填写已在国家知识产权局注册的专利代理机构名称并注明注册代码。专利代理机构指定的代理人不得超过两人，同时注明专利代理人工作证的证书号码。

8. 申请人提出分案申请时，还应填写本表第12栏。本申请为再次分案申请的，还应填写所针对的分案申请的申请号。

9. 申请涉及生物材料的发明专利，还应填写本表第14栏，并提交生物材料样品保藏证明和存活证明。

10. 申请人要求外国或者本国优先权的，还应填写本表第15栏。

11. 申请人要求不丧失新颖性宽限期的，还应填写本表第16栏，自申请日起两个月内提交证明文件。

12. 申请人要求保密处理的，应填写本表第17栏。

13. 申请人应当按实际提交的文件名称、份数、页数及权利要求项数正确填

写本表第18、19栏。请求书按A4纸型计算页数。专利局将按实收的文件数量逐项核实。

14. 申请人委托专利代理机构的，本表第20栏应加盖专利代理机构公章。申请人未委托专利代理机构的，本表第20栏应由全体申请人签字或盖章；申请人为单位的，应加盖单位公章。两份请求书中的申请人或专利代理机构的签字或盖章应当一致，不得为复印件。

15. 发明人、申请人、要求优先权声明的内容本表填写不下时，应使用专利

局统一制定的附页续写。

비용납부 주의사항

1. 출원인은 접수통지서를 받은 후 출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출원료, 공개를 위한 인쇄비와 출원부가료를 납부해야 한다. 출원인이 우선권을 요구할 경우, 출원료를 납부하는 동시에 우선권 요구비를 지불해야 한다.
2. 특허출원의 권리청구(독립권리청구 및 종속권리청구 포함)항 수가 10항을 초과한 경우, 제11항부터 추가1항마다 부가료 150위안을 납부해야 한다. 특허출원 명세서의(도면 포함)쪽수가 30쪽을 초과한 경우, 31쪽부터, 부가료 50위안을 추가 납부해야 하고, 300쪽을 초과할 경우 301쪽부터 추가1 쪽마다 부가료 100위안을 납부해야 한다.
3. 각종 비용은 국가지식산권국 특허국에 직접 납부할 수 있고, 우체국 또는 은행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4. 우체국을 통해 납부할 경우 다음의 수취인에게 납부해야 하며, 송금증추신란에 출원번호와 비용명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수취인 : **国家知识产权局专利局收费处**, 기업고객번호 : 110000860.
5. 은행을 통해 납부할 경우 계좌명(**中华人民共和国国家知识产权局专利局**), 개설은행(**中国工商银行北京北太平庄支** 行)및 계좌번호(0200010009014400518)을 송부하고, 은행송금증에 출원번호와 비용명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6. 전신환으로 송금해야만 하는 경우 은행에 송금료를 지불하고, 출원번호와 비용명칭을 정확히 기재하며, 은행이 동 내용을 송금증 사유 란에 기재하여 특허국으로 발송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7. 13자리 숫자로 된 출원번호(주: 최후 한자리는 알파벳일 수 있음)를 정확히 기입하고, 소수점은 생략해야 한다.
8. 매건의 출원비용은 단독으로 송금해야 하며, 두 건 또는 두 건 이상의 출원료를 한건으로 송금해서는 아니 된다.
9. 비용명칭은 아래 약칭을 사용할 수 있다.

기본료 (PCT) ——**基**	지정비 (PCT) ——**指**
부가료 (PCT) ——**附**	수속비 (PCT) ——**手 (手续)**
확인비 (PCT) ——**确 (确认)**	출원료 (PCT) ——**申**
인쇄비——**印**	발명특허출원료——**申**
발명특허서류등사비——**文 (文印)**	기한연장비——**宽 (宽限)**
발명특허유지비——**维**	번역문수정비——**译 (译改)**

缴费须知

一、申请人应当在收到受理通知书之后，最迟自申请日起两个月内缴纳申请费、公布印刷费和申请附加费。申请人要求优先权的，应当在缴纳申请费的同时缴纳优先权要求费。

二、一件专利申请的权利要求（包括独立权利要求和从属权利要求）数量超过十项的，从第十一项权利要求起，每项权利要求增收附加费150元；一件专利申请的说明书页数（包括附图页数）超过三十页的，从第三十一页起，每页增收附加费50元，超过三百页的，从三百零一页起，每页增收附加费100元。

三、各种专利费用可以直接向国家知识产权局专利局缴纳，也可以通过邮局或者银行汇付。

四、通过邮局汇付的，请寄收款人姓名：国家知识产权局专利局收费处 商户客户号：110000860；并应在汇款单附言栏中写明申请号、费用名称。

五、通过银行汇付的，请寄交户名：中华人民共和国国家知识产权局专利局，开户银行：中国工商银行北京北太平庄支行，帐号：0200010009014400518 ；并应在银行汇款单中写明申请号、费用名称。

六、对于只能采用电子联行汇付的，应向银行付电报费，正确填写并要求银行至少将申请号及费用名称两项列入汇款单事由栏中同时发至专利局。

七、应正确填写申请号13位阿拉伯数字（注：最后一位校验位可能是字母），小数点不需填写。

八、每一申请案的费用应单独汇款，不得将两个或两个以上申请的费用在一个单据中汇出。

九、费用名称可以使用下列简称：

基本费（PCT）——基	指定费（PCT）——指
附加费（PCT）——附	手续费（PCT）——手（手续）
确认费（PCT）——确（确认）	申请费（PCT）——申
印花费——印	发明专利申请费——申
发明专利文印费——文（文印）	宽限费——宽（宽限）
发明专利维持费——维	译文改正费——译（译改）

단일성회복비——**单（单恢）**　　발명특허출원심사비——**审**
발명특허복심비——**复**　　발명특허등기인쇄비——**登**
변경비——**变**　　우선권요구비——**优**
개정우선권요구청구료——**改（改优）**　　권리회복청구료——**恢**
중지절차청구료——**中（中止）**
발명특허권무효선고청구료——**无（无效）**
발명특허강제허가청구료——**强（强求）**
강제허가사용판결청구료——**强（强裁）**
연장비——**延**　　권리요구부가료——**权（权附）**
명세서부가료——**说（说附）**　　발명특허연차료——**年**
발명특허연차료체납금——**滞（年滞）**　　전송비（PCT）——**传（传送）**
검색비（PCT）——**检（检索）**　　부가검색비（PCT）——**附（附检）**
우선권서류전송비（PCT）——**优（优传）**
초보심사비（PCT）——**初（初审）**
초보심사부가료（PCT）——**初附**　　단일성이의비——**单异**
체납금（PCT）——**滞**　　복사본복제비（PCT）——**副**

10. 상기 규정의 납부방식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법률 책임은 송금인이 부담한다.

单一性恢复费——单（单恢）　发明专利申请审查费——审
发明专利复审费——复　　发明专利登记印刷费——登
变更费——变　　优先权要求费——优
改正优先权要求请求费——改（改优）　恢复权利请求费——恢
中止程序请求费——中（中止）
发明专利权无效宣告请求费——无（无效）
发明专利强制许可请求费——强（强求）
强制许可使用裁决请求费——强（强裁）
延长费——延　　权利要求附加费——权（权附）
说明书附加费——说（说附）　发明专利年费——年
发明专利年费滞纳金——滞（年滞）　传送费（PCT）——传（传送）
检索费（PCT）——检（检索）　附加检索费（PCT）——附（附检）
优先权文件传送费（PCT）——优（优传）
初步审查费（PCT）——初（初审）
初步审查附加费（PCT）——初附　　单一性异议费——单异
滞纳金（PCT）——滞　　副本复制费（PCT）——副

十、未按上述规定办理缴费手续的，所产生的法律后果由汇款人承担。

실용신안특허출원서

뒷면의 '기재시 주의사항'을 참조하여 표기란을 정확히 기재해 주십시오

아래 내용은 특허국에서 기재
① 출원번호 (발명)
②분할 제출일
③ 출원일
④ 비용감면 심사
⑤등록번호

⑥ 실명용신안칭					
⑦ 발명자					
⑧ 출원인	제1서명출원인	성명 또는 명칭			
		기관코드 또는 개인신분증번호			
		국적·거주국가 또는 지방		전 화	
		주소	우편번호	성, 자치구, 직할시명칭	시 (현) 명 칭
			도시 (향), 거리, 번지수		
	제2출원인	성명 또는 명칭			
		국적·거주국가 또는 지역		전 화	
		우편번호	주 소		
	제3출원인	성명 또는 명칭			
		국적·거주국가 또는 지역		전 화	
		우편번호	주 소		
⑨연락인	성 명			전 화	
	우편번호	주 소			
⑩ 제1서명 출원인이 아닌 자를 대표로 확인하는 성명 : 제____서명 출원인을 대표인으로 성명함.					
⑪ 대리	대리기구	명 칭			코 드
		우편번호	전 화		
		주 소			
	대리인1	성 명		대리인2	성 명
		신분증번호			신분증번호
		전 화			전 화
⑫분할출원	원출원번호 :	대응하는 분할출원번호 :		원출원일 : 년 월 일	

实用新型专利请求书

请按照本表背面“填表注意事项”正确填写本表各栏

此框内容由专利局填写
① 申请号　　（实用新型）
②分案 提交日
③ 申请日
④ 费减 审批
⑤ 挂号号码

⑥ 实用新型名称					
⑦ 发明人					
⑧ 申请人	第一署名申请人	姓名或名称			
		单位代码或个人身份证号			
		国籍或居所地国家或地区			电　话
		地址	邮政编码	省、自治区、直辖市名称	市（县）名　称
			城区（乡）、街道、门牌号		
	第二申请人	姓名或名称			
		国籍或居所地国家或地区			电　话
		邮政编码		地　址	
	第三申请人	姓名或名称			
		国籍或居所地国家或地区			电　话
		邮政编码		地　址	
⑨联系人	姓　名				电　话
	邮政编码		地　址		
⑩ 确定非第一署名申请人为代表人声明　　特声明第 _____ 署名申请人为申请人的代表人					
⑪ 代理	代理机构	名　称			代　码
		邮政编码		电　话	
		地　址			
	代理人1	姓　名		代理人2	姓　名
		工作证号			工作证号
		电　话			电　话
⑫分案申请	原申请号：		针对的分案申请号：		原申请日：　年　月　日

12101
2006.7

실용신안특허출원서

⑬ 실용신안명칭					
⑭ 우선권요청성명	선 출원 국가또는지역	선 출원일	선 출원번호	⑮ 신규성 예외 상실 성명	☐ 중국정부에서 주최 및 승인한 국제전람회에 처음으로 전시 ☐ 규정된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에서 처음으로 발표 ☐ 타인이 출원인의 동의 없이 내용을 유출

⑯ 출원서류 목록

1.출원서	부	한부	쪽
2.명세서 요약	부	한부	쪽
3.요약부도	부	한부	쪽
4.권리요구서	부	한부	쪽
5.명세서	부	한부	쪽
6.명세서 도면	부	한부	쪽

권리요구 항목 (권리청구항)수 : 개

⑰ 첨부 문서 리스트

- ☐ 비용감면청구서 부 한부 쪽
- ☐ 비용감면청구증명 부 한부 쪽
- ☐ 양도증명 부 한부 쪽
- ☐ 특허대리위임장 부 한부 쪽
- ☐ 선 출원서류사본 부수 총 쪽
- ☐ 원 출원서류사본 부 한부 쪽
- ☐ 선 출원서류사본첫쪽번역문 부 한부 쪽
- ☐ 기타 증명서류(서류이름을 정확기 표기요망)
- ☐
- ☐

⑱ 전체출원인 또는 특허대리기구 서명날인

년 월 일

⑲ 서류목록에 대한 특허국 심사

년 월 일

12101
2006.7

实用新型专利请求书

⑬ 实名用新型称					
⑭ 要求优先权声明	在先申请国别或地区	在先申请日	在先申请号	⑮ 不丧失新颖性宽限期声明	☐ 已在中国政府主办或承认的国际展览会上首次展出 ☐ 已在规定的学术会议或技术会议上首次发表 ☐ 他人未经申请人同意而泄露其内容

⑯ 申请文件清单

1. 请求书	份	每份	页
2. 说明书摘要	份	每份	页
3. 摘要附图	份	每份	页
4. 权利要求书	份	每份	页
5. 说明书	份	每份	页
6. 说明书附图	份	每份	页

权利要求的项数 项

⑰ 附加文件清单

- ☐ 费用减缓请求书 份 每份 页
- ☐ 费用减缓请求证明 份 每份 页
- ☐ 转让证明 份 每份 页
- ☐ 专利代理委托书 份 每份 页
- ☐ 在先申请文件副本 份数 共 页
- ☐ 原申请文件副本 份 每份 页
- ☐ 在先申请文件副本首页译文 份 每份 页
- ☐ 其他证明文件(注明文件名称)
- ☐
- ☐

⑱ 全体申请人或专利代理机构签章

年 月 日

⑲ 专利局对文件清单的审核

年 月 日

12101
2006.7

실용실안특허출원서영문정보

실용신안 명칭	중문
	영문
출원인 명칭 및 주소	
발명인 성명	

实用新型专利请求书英文信息

实用新型名称	中文
	英文
申请人名称及地址	
发明人姓名	

작성시 주의사항

1. 실용신안특허 출원 시 실용신안특허출원서, 권리요구서(권리청구항), 명세서, 명세서 요약을 제출해야 하고, 도면이 있을 경우, 도면 및 요약도면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출원서류는 1건당 2부씩 제출해야 한다. (서식은 국가지식산권국 홈페이지에서 www.sipo.gov.cn에서 다운 받을 수 있음)
2. 출원서는 국가에서 발표한 중문 간체자로 기재해야 하며 글자는 검은색으로 본문을 프린트 또는 인쇄해야 하며, 외국인 성명・명칭・지명에 통일된 번역문이 없을 경우 출원서 영문정보 표에 원문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3. 출원서의 '□'는 기재자가 선택 시 사용하고, '□' 뒤에 기술내용이 있는 경우, '□'에 체크해야 한다.
4. 출원서의 거주지란에 중국 주소를 기재하는 경우, 소재 지역의 우편번호, 성(자치구), 시(자치주), 구, 번지수와 전화번호 또는 성(자치구), 현(자치현), 촌(향), 번지수와 전화번호 또는 직할시, 구, 번지수와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하며, 우체국 사서함이 있을 경우 규정에 따라 우체국 사서함을 사용할 수 있다. 외국의 주소일 경우 국가, 시(현, 주)를 명확히 기재하고, 외국어로 된 상세한 주소를 첨부해야 한다.
5. 출원인이 출원료용감면을 청구하는 경우, 출원서류를 제출하는 동시에 비용감면청구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6. 구체적 기재설명

6.1 제1, 2, 3, 4, 5, 19란은 특허국에서 기재함.

6.2 제6, 13란의 발명명칭은 간결하고 정확해야 하며, 25자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6.3 제7란의 발명자가 개인이고 2인 이상일 경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 순서로 기재해야 하며, 발명자는 특허국에 성명을 공개하지 않도록 요청을 할 수 있으나, 성명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 발명자 뒤에 '(성명비공개)'라고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6.4 제8란의 출원인이 기업 또는 단체일 경우 기업 또는 단체의 정식명칭 전체를 기재하고, 날인한 기관명칭과 일치해야 한다. 출원인이 개인일 경우, 본인의 실명을 기재해야 하고 필명 또는 기타 비공식 성명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출원인이 다수이며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하지 않을 경우, 출원서에 다른 성명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출원서에서 지정한 제1서명 출원인이 대표자가 된다. 제1서명 출원인이 기업 또는 단체일 경우 기관코드를 기재하고, 제1서명 출원인이 개인일 경우, 개인신분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填表注意事项

一、申请实用新型专利，应当提交实用新型专利请求书、权利要求书、说明书、说明书附图、说明书摘要、摘要附图。申请文件应当一式两份。（表格可在国家知识产权局网站www.sipo.gov.cn下载）

二、本表应使用国家公布的中文简化汉字填写，表中文字应当打字或者印刷，字迹为黑色。外国人姓名、名称、地名无统一译文时，应同时在请求书英文信息表中注明原文。

三、本表中方格□供填表人选择使用，若有方格后所述内容的，应在方格内作标记。

四、本表中所有地址栏，本国的地址应包括所在地区的邮政编码，以及省（自治区）、市（自治州）、区、街道门牌号码和电话号码，或者省（自治区）、县（自治县）、镇（乡）、街道门牌号码和电话号码，或者直辖市、区、街道门牌号码和电话号码。有邮政信箱的，可以按规定使用邮政信箱。外国的地址应当注明国别、市（县、州），并附具外文详细地址。

五、申请人请求减缓申请费，应当在提交申请文件的同时提交费用减缓请求书及有关证明文件。

六、填表说明

1. 本表第1、2、3、4、5、19 栏由专利局填写。

2. 本表第6、13 栏发明名称应简短、准确，一般不得超过25个字。

3. 本表第7栏发明人应当是个人。发明人有两个以上的应先自左向右、再自上而下依次填写。发明人可以请求专利局不公布其姓名。如提出不公布姓名，应当在此栏所填写的相应发明人后面注明“（不公布姓名）”。

4. 本表第8栏申请人是单位的，应填写单位正式全称，并与所使用的公章上的单位名称一致。申请人是个人的，应填写本人真实姓名，不得使用笔名或其他非正式的姓名。申请人为多个，又未委托专利代理机构，除在请求书中另有声明以外，以请求书中指明的第一署名申请人为代表人。第一署名申请人是单位的，应填写单位代码；第一署名申请人是个人的，应填写个人身份证号码。

6.5 특허대리기구에 위임하지 않을 경우, 제9란에서 지정한 연락인은 출원인을 대신해서 특허국에서 발송한 서신의 수취인이 되며, 출원인이 기업 또는 단체이고 특허대리기구에 위임하지 않을 경우 연락인을 기재해야 한다. 기타 상황에서 연락인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고, 연락인을 한 명만 적을 수도 있으며, 연락인 기재 시 연락인의 연락주소, 우편번호 및 전화번호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출원서에 연락인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제1서명 출원인이 수취인이 되며, 출원인이 2명 이상(2명 포함)이고 출원서의 제1서명 출원인이 아닌 자를 대표인으로 성명한 경우 수취인은 동 대표자가 된다.

6.6 출원인이 지정한 대표자가 제1서명 출원인이 아닐 경우, 제10란에 확정된 대표자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대표자의 권리는 공유권리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제외하고, 전체 출원인을 대표하여 특허국에서 각종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6.7 출원인이 특허대리기구에 위임할 경우, 제11란에 국가지식산권국에 등록한 특허대리기구명칭을 기재하고 등록코드를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특허대리기구에서 지정한 대리인은 2명을 초과해서는 아니되고, 특허대리인의 업무증의 증서번호를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6.8 출원인이 분할출원을 제출한 경우 제12란을 기재해야 한다. 출원이 두 번째 분할출원일 경우 첫 분할출원의 출원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6.9 출원인인 외국 또는 본국 우선권을 요구할 경우, 제14란을 기재해야 한다.

6.10 출원인이 신규성 상실 예외를 요구할 경우, 제16란을 기재하고, 출원일부터 2개월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6.11 출원인은 실제 제출한 서류의 명칭, 부수, 페이지수 및 권리요구 항목 수를 정확하게 제16,17란에 기재해야 한다. 출원서는 A4용지를 기준으로 페이지수를 계산한다. 특허국은 실제 받은 서류 수대로 항목별로 심사한다.

6.12 출원인이 특허대리기구에 위임할 경우 제18란의 특허대리기구에 날인하고, 출원인이 대리기구에 위임하지 아니한 경우 제18란에 전체 출원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출원인이 기업 또는 단체일 경우, 당해 기업 또는 단체의 인장을 날인해야 한다. 출원서 2부의 출원인 또는 특허대리기구의 서명 또는 날인은 일치해야 하며 복사본이어서는 아니 된다.

6.13 발명자, 신청인, 우선권성명요구의 내용을 출원서에 전부 기재할 수 없을 경우, 특허국에서 양식으로 지정한 첨부 페이지에 연속으로 기재해야 한다.

5. 本表第9栏，未委托专利代理机构的，指定的联系人是代替申请人接收专利局所发信函的收件人，申请人是单位且没有委托专利代理机构的，应当填写联系人，其他情形下可以不填写联系人，联系人只能填写一人，填写联系人的，还需要同时填写联系人的通信地址、邮政编码和电话号码；请求书中未指明联系人的，第一署名申请人为收件人；申请人有两个以上（含两个）时，请求书中另有声明指定非第一署名申请人为代表人的，收件人为该代表人。
6. 申请人指定非第一署名申请人为代表人时，应在第10栏指明被确定的代表人。
   代表人的权利：除直接涉及共有权利的手续外，代表人可以代表全体申请人办理在专利局的各种事务。
7. 本表第11栏，申请人委托专利代理机构的，还应填写已在国家知识产权局注册的专利代理机构名称并注明注册代码。专利代理机构指定的代理人不得超过两人，同时注明专利代理人工作证的证书号码。
8. 申请人提出分案申请时，还应填写本表第12栏。本申请为再次分案申请的，还应填写所针对的分案申请的申请号。
9. 申请人要求外国或者本国优先权的，还应填写本表第14栏。
10. 申请人要求不丧失新颖性宽限期的，还应填写本表第15栏。自申请日起两个月内提交证明文件。
11. 申请人应当按实际提交的文件名称、份数、页数及权利要求项数正确填写本表第16、17栏。请求书按A4纸型计算页数。专利局将按实收的文件数量逐项核实。
12. 申请人委托专利代理机构的，本表第18栏应加盖专利代理机构公章。申请人未委托专利代理机构的，本表第18栏应由全体申请人签字或盖章；申请人为单位的，应加盖单位公章。两份请求书中的申请人或专利代理机构的签字或盖章应当一致，不得为复印件。
13. 发明人、申请人、要求优先权声明的内容本表填写不下时，应使用专利局统一制定的附页续写。

비용납부 주의사항

1. 출원인은 접수통지서를 받은 후 출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출원료, 공개인쇄비와 출원부가료를 납부해야 한다. 출원인이 우선권을 요구할 경우, 출원료를 납부하는 동시에 우선권 요구비를 지불해야 한다.
2. 특허출원의 권리청구(독립권리청구 및 종속권리청구 포함)항 수가 10항을 초과한 경우, 제11항부터 추가되는 항마다 부가료 150위안을 납부해야 한다. 특허출원 명세서의(도면 포함)쪽수가 30쪽을 초과한 경우, 31쪽부터, 부가료 50위안을 추가 납부해야 하고, 300쪽을 초과할 경우 301쪽부터 추가1 쪽마다 부가료 100위안을 납부해야 한다.
3. 각종 비용은 국가지식산권국 특허국에 직접 납부할 수 있고, 우체국 또는 은행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4. 우체국을 통해 납부할 경우 다음의 수취인에게 납부해야 하며, 송금증추신란에 출원번호와 비용명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수취인 : **国家知识产权局专利局收费处**, 기업고객번호 : 110000860.
5. 은행을 통해 납부할 경우 계좌명(**中华人民共和国国家知识产权局专利局**), 개설은행(**中国工商银行北京北太平庄支 行**)및 계좌번호(0200010009014400518)을 송부하고, 은행송금증에 출원번호와 비용명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6. 전신환으로 송금해야만 하는 경우 은행에 송금료를 지불하고, 출원번호와 비용명칭을 정확히 기재한 후, 동시에 은행으로 하여금 두 가지 항목을 송금증 사유 란에 기재하여 특허국으로 발송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7. 13자리 숫자로 된 출원번호(주: 최후 한자리는 알파벳일 수 있음)를 정확히 기입하고, 소수점은 생략해도 된다.
8. 매건의 출원 비용은 단독으로 송금해야 하며,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출원료를 한건으로 송금해서는 아니 된다.
9. 비용명칭은 아래 약칭을 사용할 수 있다.

기본비 (PCT) ——**基**	지정비 (PCT) ——**指**
부가비 (PCT) ——**附**	수속비 (PCT) ——**手**（**手续**）
확인비 (PCT) ——**确**（**确认**）	출원비 (PCT) ——**申**
인세비——**印**	기한연장비 ——**宽**（**宽限**）
실용신안특허출원비 ——**文**（**文印**）	번역문개정비——**译**（**译改**）
단일성회복비——**单**（**单恢**）	실용신안특허검색비——**检**（**实检**）

缴费须知

一、申请人应当在收到受理通知书之后，最迟自申请日起两个月内缴纳申请费和申请附加费。申请人要求优先权的，应当在缴纳申请费的同时缴纳优先权要求费。

二、一件专利申请的权利要求（包括独立权利要求和从属权利要求）数量超过十项的，从第十一项权利要求起，每项权利要求增收附加费150元；一件专利申请的说明书页数（包括附图页数）超过三十页的，从第三十一页起，每页增收附加费50元，超过三百页的，从三百零一页起，每页增收附加费100元。

三、各种专利费用可以直接向国家知识产权局专利局缴纳，也可以通过邮局或者银行汇付。

四、通过邮局汇付的，请寄收款人姓名：国家知识产权局专利局收费处 商户客户号：110000860；并应在汇款单附言栏中写明申请号、费用名称。

五、通过银行汇付的，请寄交户名：中华人民共和国国家知识产权局专利局，开户银行：中国工商银行北京北太平庄支行，帐号：0200010009014400518 ；并应在银行汇款单中写明申请号、费用名称。

六、对于只能采用电子联行汇付的，应向银行付电报费，正确填写并要求银行至少将申请号及费用名称两项列入汇款单事由栏中同时发至专利局。

七、应正确填写申请号13位阿拉伯数字（注：最后一位校验位可能是字母），小数点不需填写。

八、每一申请案的费用应单独汇款，不得将两个或两个以上申请的费用在一个单据中汇出。

九、费用名称可以使用下列简称：

基本费（PCT）——基	指定费（PCT）——指
附加费（PCT）——附	手续费（PCT）——手（手续）
确认费（PCT）——确（确认）	申请费（PCT）——申
印花费——印	宽限费——宽（宽限）
实用新型专利申请费——申	译文改正费——译（译改）
单一性恢复费——单（单恢）	实用新型检索费——检（实检）

실용신안특허복심비——**复**　　변경비——**变**
우선권요구비——**优**　　우선권요구개정청구비——**改（改优）**
권리회복청구비——**恢**　　중지절차청구비——**中（中止）**
실용신안특허권무효선고청구비——**无（无效）**
실용신안특허강제허가청구비——**强（强求）**
강제허가사용판결청구비——**强（强裁）**
실용신안특허등기인쇄비——**登**
연장비——**延**　　권리요구부가비——**权（权附）**
설명서부가비——**说（说附）**　　실용신안특허연차료——**年**
실용신안특허연차료체납금——**滞（年滞）**
전송비（PCT）——**传（传送）**
검색비（PCT）——**检（检索）**　　부가검색비（PCT）——**附（附检）**
우선권문서전송비（PCT）——**优（优传）**
초보심사비（PCT）——**初（初审）**
초보심사부가비（PCT）——**初附**　　단일성이의비——**单异**
체납금（PCT）——**滞**　　복사본복사비（PCT）——**副**

10. 상기 규정의 납부방식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법률 책임은 송금인이 부담한다.

实用新型专利复审费——复　　变更费——变
优先权要求费——优　　改正优先权要求请求费——改（改优）
恢复权利请求费——恢　　中止程序请求费——中（中止）
实用新型专利权无效宣告请求费——无（无效）
实用新型专利强制许可请求费——强（强求）
强制许可使用裁决请求费——强（强裁）
实用新型专利登记印刷费——登
延长费——延　　权利要求附加费——权（权附）
说明书附加费——说（说附）　实用新型专利年费——年
实用新型专利年费滞纳金——滞（年滞）
传送费（PCT）——传（传送）
检索费（PCT）——检（检索）　附加检索费（PCT）——附（附检）
优先权文件传送费（PCT）——优（优传）
初步审查费（PCT）——初（初审）
初步审查附加费（PCT）——初附　　单一性异议费——单异
滞纳金（PCT）——滞　　副本复制费（PCT）——副

十、未按上述规定办理缴费手续的，所产生的法律后果由汇款人承担。

디자인특허출원서

뒷면의"기재시 주의사항"을 참조하여 표기란을 정확히 기재해 주십시오

아래 내용은 특허국에서 기재
① 신청번호 (디자인)
②분할 제출일
③ 신청일
④ 비용감면 심사
⑤ 등록번호

⑥ 동사제 디용품 자한명 인 칭 을제				
⑦ 설계인				
⑧ 출원인	제1서명출원인	성명 또는 명칭		
		기관코드 또는 개인신분증번호		
		국적·거주국가 또는 지역		전 화
		주소	우편번호 / 성 자치구 직할시명칭	시 (현) 명 칭
			지역 (농촌), 거리, 번지수	
	제2출원인	성명 또는 명칭		
		국적·거주국가 또는 지역		전 화
		우편번호	주 소	
	제3출원인	성명 또는 명칭		
		국적·거주국가 또는 지역		전 화
		우편번호	주 소	
⑨연락인	성 명			전 화
	우편번호		주 소	
⑩ 제1서명 출원인이 아닌 자를 대표로 성명 확정하는 성명: 제____서명 출원인이 대표인 성명함				
⑪ 대리	대리기구	명 칭		코 드
		우편번호	전 화	
		주 소		
	대리인1	성 명		대리인2
		신분증번호		
		전 화		
⑫분할출원	원출원번호 :	대응된 분할출원번호 :	원출원일 : 년 월 일	

外观设计专利请求书

请按照本表背面“填表注意事项”正确填写本表各栏					此框内容由专利局填写
⑥ 使用该设计产品的外观名称					① 申请号 （外观设计）
					②分案提交日
⑦ 设计人					③ 申请日
					④ 费减审批
					⑤ 挂号号码
⑧ 申请人	第一署名申请人	姓名或名称			
		单位代码或个人身份证号			
		国籍或居所地国家或地区			电 话
		地址	邮政编码	省、自治区、直辖市名称	市（县）名 称
			城区（乡）、街道、门牌号		
	第二申请人	姓名或名称			
		国籍或居所地国家或地区			电 话
		邮政编码	地 址		
	第三申请人	姓名或名称			
		国籍或居所地国家或地区			电 话
		邮政编码	地 址		
⑨联系人	姓 名				电 话
	邮政编码		地 址		
⑩ 确定非第一署名申请人为代表人声明			特声明第____署名申请人为申请人的代表人		
⑪ 代理	代理机构	名 称			代 码
		邮政编码	电 话		
		地 址			
	代理人1	姓 名		代理人2	姓 名
		工作证号			工作证号
		电 话			电 话
⑫分案申请	原申请号：		针对的分案申请号：		原申请日： 年 月 日

디자인특허출원서

<table>
<tr><td>⑬ 디사물자용품인한의을 명칭</td><td colspan="3"></td><td>⑭ 물 분품의 류</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⑮ 우선권요구성명</td><td>선 출원 국가또는지역</td><td>선 출원일</td><td colspan="2">선 출원번호</td><td rowspan="2">⑯ 신규성 예외 성명 상실</td><td rowspan="2">☐ 중국정부에서 주최 및 승인한 국제 전시회에서 처음 으로 전시
☐ 규정된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 에서 처음으로 발표
☐ 타인이 출원인의 동의 없이 내용을 유출</td></tr>
<tr><td></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3">⑰ 출원서류 목록 문건 목록
1.출원서 부 한부 쪽
2.도면 또는 사진 부 한부 쪽
3.간단한 설명 부 한부 쪽
도면 또는 사진 매부 쪽 총 매</td><td colspan="4">⑱ 첨부서류 목록
☐ 비용감면청구서 부 한부 쪽
☐ 비용감면청구증명 부 한부 쪽
☐ 양도증명 부 한부 쪽
☐ 특허대리위임장 부 한부 쪽
☐ 선출원서류사본 부수 총 쪽
☐ 선출원서류사본 첫쪽번역문 부 한부 쪽
☐ 선 출원서류사본 부 한부 쪽
☐ 기타 증명서류 (서류이름을 정확히 표기요망)
☐</td></tr>
<tr><td colspan="3">⑲ 전체신청인 또는 특허대리기구 서명날인
년 월 일</td><td colspan="4">⑳ 서류목록에 대한 특허국 심사
년 월 일</td></tr>
</table>

外观设计专利请求书

<table>
<tr><td>⑬ 使用该设计的产品名称</td><td colspan="3"></td><td>⑭ 产品所属类别</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⑮ 要求优先权声明</td><td>在先申请国别或地区</td><td>在先申请日</td><td colspan="2">在先申请号</td><td rowspan="2">⑯ 不丧失新颖性宽限期声明</td><td rowspan="2">☐ 已在中国政府主办或承认的国际展览会上首次展出
☐ 已在规定的学术会议或技术会议上首次发表
☐ 他人未经申请人同意而泄露其内容</td></tr>
<tr><td></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3">⑰ 申请文件清单
1. 请求书 份 每份 页
2. 图片或照片 份 每份 页
3. 简要说明 份 每份 页
图片或照片每份 页 共 幅</td><td colspan="4">⑱ 附加文件清单
☐ 费用减缓请求书 份 每份 页
☐ 费用减缓请求证明 份 每份 页
☐ 转让证明 份 每份 页
☐ 专利代理委托书 份 每份 页
☐ 在先申请文件副本 份数 共 页
☐ 在先申请文件副本首页译文 份 每份 页
☐ 原申请文件副本 份 每份 页
☐ 其他证明文件(注明文件名称)
☐</td></tr>
<tr><td colspan="3">⑰ 全体申请人或专利代理机构签章
年 月 日</td><td colspan="4">⑱ 专利局对文件清单的审核
年 月 日</td></tr>
</table>

디자인특허출원서영문정보

동일디자인을 사용한 제품명칭	중문
	영문
출원인 명칭 및 주소	
설계인 성명	

外观设计专利请求书英文信息

使用该外观设计的产品名称	中文
	英文
申请人名称及地址	
设计人姓名	

작성시 주의사항

1. 발명특허 출원 시 발명특허출원서, 권리요구서, 명세서 및 명세서 요약본을 제출해야 하고, 도면이 있을 경우 해당 도면 및 도면요약본을 동시에 제출해야 하며, 출원서류는 1건당 2부씩 제출해야 한다. (서식은 국가지식산권국 홈페이지에서 www.sipo.gov.cn에서 다운 받을 수 있음)
2. 출원서는 국가에서 발표한 중문 간체자로 기재해야 하며 글자는 검은색으로 본문을 프린트 또는 인쇄해야 하며, 외국인 성명・명칭・지명에 통일된 번역문이 없을 경우 출원서 영문정보 표에 원문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3. 출원서의 '□'는 기재자가 선택 시 사용하고, '□' 뒤에 기술내용이 있는 경우, '□'에 체크해야 한다.
4. 출원서의 거주지란에 중국 주소를 기재하는 경우, 소재 지역의 우편번호, 성(자치구), 시(자치주), 구, 번지수와 전화번호 또는 성(자치구), 현(자치현), 촌(향), 번지수와 전화번호 또는 직할시, 구, 번지수와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하며, 우체국 사서함이 있을 경우 규정에 따라 우체국 사서함을 사용할 수 있다. 외국의 주소일 경우 국가, 시(현, 주)를 명확히 기재하고, 외국어로 된 상세한 주소를 첨부해야 한다.
5. 출원인이 출원료용감면을 청구하는 경우, 출원서류를 제출하는 동시에 비용감면청구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6. 구체적 기재설명

6.1 제1, 2, 3, 4, 5, 20란은 특허국에서 기재한다.

6.2 제6, 13란은 디자인을 사용하는 물품의 명칭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명시해야 하며, 물품의 명칭은 1-10자를 기준으로 하며, 20자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14란은 국제디자인분류표의 분류번호로 기재해야 한다.

6.3 제7란의 설계자가 개인이고 2인 이상일 경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 순서로 기재해야 하며, 설계자는 특허국에 성명을 공개하지 않도록 요청을 할 수 있다. 성명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설계자 뒤에 '(성명비공개)'라고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填表注意事项

一、申请外观设计专利，应当提交外观设计专利请求书、外观设计图片或照片，必要时应当同时提交外观设计简要说明。申请文件应当一式两份。（表格可在国家知识产权局网站www.sipo.gov.cn下载）

二、本表应使用国家公布的中文简化汉字填写，表中文字应当打字或者印刷，字迹为黑色。外国人姓名、名称、地名无统一译文时，应同时在请求书英文信息表中注明原文。

三、本表中方格□供填表人选择使用，若有方格后所述内容的，应在方格内作标记。

四、本表中所有地址栏，本国的地址应包括所在地区的邮政编码，以及省（自治区）、市（自治州）、区、街道门牌号码和电话号码，或者省（自治区）、县（自治县）、镇（乡）、街道门牌号码和电话号码，或者直辖市、区、街道门牌号码和电话号码。有邮政信箱的，可以按规定使用邮政信箱。外国的地址应当注明国别、市（县、州），并附具外文详细地址。

五、申请人请求减缓申请费，应当在提交申请文件的同时提交费用减缓请求书及有关证明文件。

六、填表说明

1. 本表第1、2、3、4、5、20 栏由专利局填写。

2. 本表第6、13栏使用该外观设计的产品名称应简短、准确地表明请求保护的产品。产品名称以1-10个字为宜，一般不得超过20个字。第14栏应按国际外观设计分类表上的分类号填写。

3. 本表第7栏设计人应当是个人。设计人有两个以上的应先自左向右、再自上而下依次填写。设计人可以请求专利局不公布其姓名。如提出不公布姓名，应当在此栏所填写的相应设计人后面注明“（不公布姓名）”。

6.4 제8란의 출원인이 기업 또는 단체일 경우 기업 또는 단체의 정식명칭 전체를 기재하고, 날인한 기관명칭과 일치해야 한다. 출원인이 개인일 경우, 본인의 실명을 기재해야 하고 필명 또는 기타 비공식 성명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출원인이 다수이며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하지 않을 경우, 출원서에 다른 성명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출원서에서 지정한 제1서명 출원인이 대표자가 된다. 제1서명 출원인이 기업 또는 단체일 경우 기관코드를 기재하고, 제1서명 출원인이 개인일 경우, 개인신분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6.5 특허대리기구에 위임하지 않을 경우, 제9란에서 지정한 연락인은 출원인을 대신해서 특허국에서 발송한 서신의 수취인이 되며, 출원인이 기업 또는 단체이고 특허대리기구에 위임하지 않을 경우 연락인을 기재해야 한다. 기타 상황에서 연락인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고, 연락인을 한 명만 적을 수도 있으며, 연락인 기재 시 연락인의 연락주소, 우편번호 및 전화번호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출원서에 연락인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제1서명 출원인이 수취인이 되며, 출원인이 2명 이상(2명 포함)이고 출원서의 제1서명 출원인이 아닌 자를 대표인으로 성명한 경우 수취인은 동 대표자가 된다.

6.6 출원인이 지정한 대표자가 제1서명 출원인이 아닐 경우, 제10란에 확정된 대표자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대표자의 권리는 공유권리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제외하고, 전체 출원인을 대표하여 특허국에서 각종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6.7 출원인이 특허대리기구에 위임한 경우, 제11란에 국가지식산권국에 등록한 특허대리기구명칭을 기재하고 등록코드를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특허대리기구에서 지정한 대리인은 2명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고, 특허대리인의 업무증의 증서번호를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6.8 출원인이 분할출원을 하는 경우 제12란을 기재해야 한다. 출원이 두 번째 분할출원일 경우 첫 분할출원의 출원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6.9 제14란에 출원인은 국제디자인분류표를 기준으로 대분류와 소분류를 기재하고, 물품의 유형이 불명확할 경우 물품의 사용영역, 용도, 사용방법 또는 사용장소를 기재해야 한다.

6.10 출원인이 외국 우선권을 요구할 경우 제15란을 기재해야 한다.

6.11 출원인이 신규성 상실 예외를 요구하는 경우 제16란에 기재하고, 출원일부터 2개월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 本表第8栏申请人是单位的，应填写单位正式全称，并与所使用的公章上的单位名称一致。申请人是个人的，应填写本人真实姓名，不得使用笔名或其他非正式的姓名。申请人为多个，又未委托专利代理机构，除在请求书中另有声明以外，以请求书中指明的第一署名申请人为代表人。第一署名申请人是单位的，应填写单位代码；第一署名申请人是个人的，应填写个人身份证号码。
5. 本表第9栏，未委托专利代理机构的，指定的联系人是代替申请人接收专利局所发信函的收件人，申请人是单位且没有委托专利代理机构的，应当填写联系人，其他情形下可以不填写联系人，联系人只能填写一人，填写联系人的，还需要同时填写联系人的通信地址、邮政编码和电话号码；请求书中未指明联系人的，第一署名申请人为收件人；申请人有两个以上（含两个）时，请求书中另有声明指定非第一署名申请人为代表人的，收件人为该代表人。
6. 申请人指定非第一署名申请人为代表人时，应在第10栏指明被确定的代表人。代表人的权利：除直接涉及共有权利的手续外，代表人可以代表全体申请人办理在专利局的各种事务。
7. 本表第11栏，申请人委托专利代理机构的，还应填写已在国家知识产权局注册的专利代理机构名称并注明注册代码。专利代理机构指定的代理人不得超过两人，同时注明专利代理人工作证的证书号码。
8. 申请人提出分案申请时，还应填写本表第12栏。本申请为再次分案申请的，还应填写所针对的分案申请的申请号。
9. 本表第14栏，申请人应按国际外观设计分类表填写大类和小类，不明确产品所属类别的，应写明产品所属领域、用途、使用方法或使用场所。
10. 申请人要求外国优先权的，还应填写本表第15栏。
11. 申请人要求不丧失新颖性宽限期的，应填写本表第16栏。自申请日起两个月内提交证明文件。

6.12 출원인은 실제 제출한 서류의 명칭, 부수, 페이지수 및 권리요구항목(권리청구항)수를 정확하게 제18,19란에 기재해야 한다. 출원서는 A4용지를 기준으로 페이지 수를 계산하고 특허국은 실제 받은 서류 수에 따라 항목별로 심사한다.

6.13 출원인이 특허대리기구에 위임한 경우 제20란에 특허대리기구에 날인을 하고, 출원인이 대리기구에 위임하지 아니한 경우 제20란에 전체 출원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출원인이 기업 또는 단체일 경우, 당해 기업 또는 단체의 인장을 날인해야 한다. 출원서 2부의 출원인 또는 특허대리기구의 서명 또는 날인은 일치해야 하며 복사본이어서는 아니 된다.

6.14 설계자, 신청인, 우선권성명요구의 내용을 동 도표에 전부 기재할 수 없을 경우, 특허국에서 양식으로 지정한 첨부 페이지에 이어서 기재해야 한다.

12. 申请人应当按实际提交的文件名称、份数、页数等正确填写本表第17、18栏。请求书按A4纸型计算页数。专利局将按实收的文件数量逐项核实。
13. 申请人委托专利代理机构的，本表第19栏应加盖专利代理机构公章。申请人未委托专利代理机构的，本表第19栏应由全体申请人签字或盖章；申请人为单位的，应加盖单位公章。两份请求书中的申请人或专利代理机构的签字或盖章应当一致，不得为复印件。
14. 设计人、申请人、要求优先权声明的内容本表填写不下时，应使用专利局统一制定的附页续写。

비용납부 주의사항

1. 출원인은 접수통지서를 받은 후, 출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출원료, 공개 인쇄비 및 출원부가료를 납부해야 한다. 출원인이 우선권을 요구할 경우, 출원료를 납부하는 동시에 우선권 요구비를 지불해야 한다.
2. 각종 비용은 국가지식산권국 특허국에 직접 납부할 수 있고, 우체국 또는 은행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3. 우체국을 통해 납부할 경우 다음의 수취인에게 납부해야 하며, 송금증 추신란에 출원번호와 비목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수취인 : **国家知识产权局专利局收费处**, 기업고객번호 : 110000860.
4. 은행을 통해 납부할 경우 계좌명(**中华人民共和国国家知识产权局专利局**), 개설은행(**中国工商银行北京北太平庄支 行**)및 계좌번호(0200010009014400518)을 송부하고, 은행송금증에 출원번호와 비용명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5. 전신환으로 송금해야만 하는 경우 은행에 송금료를 지불하고, 출원번호와 비용명칭을 정확히 기재한 후, 동시에 은행이 동 내용을 송금증 사유 란에 기재하여 특허국으로 발송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6. 13자리 숫자로 된 출원번호(주: 최후 한자리는 알파벳일 수 있음)를 정확히 기입하고, 소수점은 생략해야 한다.
7. 매 출원 건의 비용은 단독으로 송금해야 하며,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출원료를 하나의 영수증으로 송금해서는 아니 된다.
8. 비용명칭은 아래 약칭을 사용할 수 있다.

   인쇄비——**印**
   디자인특허출원료——**申**
   단일성회복비——**单（单恢）**
   디자인특허복심비——**复**
   변경비——**变**
   우선권요구비——**优**
   우선권요구개정청구료——**改（改优）**
   권리회복청구료——**恢**
   중지절차청구료——**中（中止）**
   디자인특허권무효선고청구료——**无（无效）**
   디자인특허등기인쇄비——**登**

缴费须知

一、申请人应当在收到受理通知书之后，最迟自申请日起两个月内缴纳申请费。申请人要求优先权的，应当在缴纳申请费的同时缴纳优先权要求费。

二、各种专利费用可以直接向国家知识产权局专利局缴纳，也可以通过邮局或者银行汇付。

三、通过邮局汇付的，请寄收款人姓名：国家知识产权局专利局收费处 商户客户号：110000860；并应在汇款单附言栏中写明申请号、费用名称。

四、通过银行汇付的，请寄交户名：中华人民共和国国家知识产权局专利局，开户银行：中国工商银行北京北太平庄支行，帐号：0200010009014400518 ；并应在银行汇款单中写明申请号、费用名称。

五、对于只能采用电子联行汇付的，应向银行付电报费，正确填写并要求银行至少将申请号及费用名称两项列入汇款单事由栏中同时发至专利局。

六、应正确填写申请号13位阿拉伯数字（注：最后一位校验位可能是字母），小数点不需填写。

七、每一申请案的费用应单独汇款，不得将两个或两个以上申请的费用在一个单据中汇出。

八、费用名称可以使用下列简称：

印花费——印

外观设计专利申请费——申

单一性恢复费——单（单恢）

外观设计专利复审费——复

变更费——变

优先权要求费——优

改正优先权要求请求费——改（改优）

恢复权利请求费——恢

中止程序请求费——中（中止）

外观设计专利权无效宣告请求费——无（无效）

外观设计专利登记印刷费——登

연장비——**延**

디자인특허연차료——**年**

디자인특허연차료체납금——**滞（年滞）**

9. 상기 규정의 납부방식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법률 책임은 송금인이 부담한다.

延长费——延

外观设计专利年费——年

外观设计专利年费滞纳金——滞（年滞）

九、未按上述规定办理缴费手续的，所产生的法律后果由汇款人承担。

특허대리위임장

뒷면의 '작성시 주의사항'을 참조하여 표기란을 정확히 작성해 주십시오

특허법 제 19 조 규정에 따라

_____

우편번호, 주소 _____에 위임하여

명칭이 _____ 의 발명창조

1. ☐발명특허 (출원번호 또는 특허번호는)
   ☐실용신안특허 (출원번호 또는 특허번호는) 를 출원하거나 특허권 유효 기한의 모든 특허업무를 처리합니다.
   ☐디자인특허 (신청번호 또는 특허번호는)

2. ☐ 명칭이 _____

   특허번호는_____의 실용신안검색보고를 대행합니다.

특허대리기구는 상기 위임을 접수하고 대리인 _____, _____을 지정하여 위임사항을 처리합니다.

위임인 (기관 또는 개인) _____ (날인 또는 서명)

피위임인 (특허대리기구) _____ (날인)

년 월 일

商标代理委托书

请按照本表背面“填表注意事项”正确填写本表各栏

根据专利法第十九条的规定

委　托 _____

邮编、地址 _____

1.代为办理名称为 _____ 的发明创造

☐发明专利（申请号或专利号为　　）

申请 ☐实用新型专利（申请号或专利号为　　）以及在专利权有效期内的全部专利事务。

☐外观设计专利（申请号或专利号为　　）

2. ☐代为办理名称为_____

专利号为_____的实用新型检索报告。

专利代理机构接受上述委托并指定代理人_____、_____办理此项委托。

委托人（单位或个人）　　_____（盖章或签字）

被委托人（专利代理机构）　　_____（盖章）

年　月　日

작성시 주의사항

1. 위임장은 검은색 중문으로 작성해야 하며, 본문을 타이핑 또는 인쇄해야 하고, 1건당 한 부를 제출해야 한다。
2. 위임을 받은 자는 국가지식재산권국에 등록된 특허대리기구여야 하고, 위임인은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여야 한다.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개인일 경우 위임장은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고,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기업 또는 단체일 경우 동 기업 또는 단체의 인장을 날인해야 하며, 법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추가할 수 도 있다.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전체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한다. 위임장에는 특허대리기구도 추가로 날인해야 한다.
3.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위임 당사자는 전체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의 위임을 받은 특허대리기구여야 한다. 피위임대리기구는 1개사로 제한한다.
4.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위임을 해제할 경우 등록사항 변경신청을 해야 하고,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 시 전체 출원인 도는 특허권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해임장을 첨부하거나 전체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허대리기구가 위임을 사임하는 경우, 등록사항 변경신청을 해야 하고,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 제출 시 출원인・특허권자 또는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 포기를 동의하는 성명 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이미 통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특허대리기구가 날인한 성명을 첨부해야 한다.
5. 특허대리기구가 위임을 받은 후, 특허대리기구는 특허대리인을 지정하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해야 하며, 지정된 특허대리인은 2명 초과해서는 안 된다.
6. 위임장에 기재한 특허대리기구 칭, 우편번호, 주소, 출원인, 발명창조 명칭은 특허출원서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만약 특허출원이 등록사항 변경신청을 한 경우, 특허국에서 허가한 변경 내용대로 기재해야 한다.
7. 위임장의 '□'는 작성자가 선택 시 사용하고, '□' 뒤에 설명내용이 있을 경우 '□'에 체크해야 한다.

填表注意事项

一、本表应使用中文填写，字迹为黑色，文字应打字或印刷，提交一式一份。

二、本表中受委托单位应当是在国家知识产权局注册的专利代理机构，委托人应是该专利申请人或专利权人。申请人或专利权人是个人的，委托书应当由申请人或专利权人签字或者盖章；申请人或专利权人是单位的，应当加盖单位公章，同时也可以附有其法定代表人的签字或者盖章；申请人或专利权人有两个以上的，应当由全体申请人或专利权人签字或者盖章。此外，委托书还应当由专利代理机构加盖公章。

三、申请人或专利权人有两个以上的，委托的双方当事人是全体申请人或专利权人和被委托的专利代理机构。被委托的专利代理机构仅限一家。

四、申请人或专利权人解除委托时，应当办理著录项目变更申报手续，提交著录项目变更申报书时应当附具全体申请人或专利权人签字或者盖章的解聘书，或者仅提交由全体申请人或专利权人签字或者盖章的著录项目变更申报书。专利代理机构辞去委托时，应当办理著录项目变更申报手续，提交著录项目变更申报书时应当附具申请人或专利权人或者其代表人签字或者盖章的同意辞去委托声明，或者附具专利代理机构盖章的表明已通知对方当事人的声明。

五、专利代理机构接受委托后，应当指定该专利代理机构的专利代理人办理有关事务，被指定的专利代理人不得超过两名。

六、本表中所填写的专利代理机构名称、邮政编码、地址、申请人、发明创造名称应与该专利申请请求书中内容一致，如果该申请办理过著录项目变更手续的，应按照专利局批准变更后的内容填写。

七、本表方格□供填表人选择使用，若有方格所述内容的，在方格内作标记。

8. 실용신안특허검색보고 청구는 특허권자 또는 위임받은 특허대리기구가 처리할 수 있다. 실용신안특허출원 시 특허대리기구에 전 과정에 대하여 업무를 위임하였으나, 검색청구 시 실용신안특허검색과 관련된 업무를 다른 특허대리기구에 위임할 경우 새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고, 위임장에 위임권한은 실용신안특허검색보고 업무만 해당된다고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처리할 경우, 본인이 실용신안특허검색보고 업무만 처리한다고 명시해야 한다.

10008
2006.7

八、作出实用新型专利检索报告的请求可以由专利权人或者其委托的专利代理机构办理。实用新型专利在提出申请时曾经委托专利代理机构作全程代理，而请求检索时另行委托专利代理机构办理实用新型专利检索的有关手续的，应当另行提交委托书，并在委托书中写明其委托权限仅限于办理实用新型专利检索报告事务；本人办理的，应当声明本人仅办理实用新型专利检索报告事宜。

10008
2006.7

상표등록 출원서

출원인명칭 :
출원인주소 :
공동출원여부 : □예 □아니오
우편번호 :
연락인 :
전화(지역번호포함) :
팩스(지역번호포함) :
대리기구명칭 :
상표종류 : □일반 □단체 □증명 □입체 □색채
상표설명 :

분류 :
지정상품/서비스 :
(첨부 : ___페이지)

출원인 날인 (서명) : 대리기구 날인 :
대리인 서명 :

商标注册申请书

申请人名称：
申请人地址：
是否共同申请：□是　　□否
邮政编码：
联系人：
电话(含地区号)：
传真(含地区号)：
代理组织名称：
商标种类：□一般　□集体　□证明　□立体　□颜色
商标说明：

类别：
商品/服务项目：
（附页：　页）

申请人章戳（签字）：　　代理组织章戳：
代理人签字：

아래 박스에 상표도안을 붙인 후, 상표도안 5매를 별도로 첨부해야 한다.
색을 지정한 경우, 색칠한 도안 5매와 흑백 도안 1매를 첨부해야 한다.
도안의 크기는 5×5cm 보다 크고 10×10cm보다 작아야 한다.

주 :

1. 대리위임을 하지 않은 경우, 대리기구 란에 기입할 필요가 없다.
2. 출원상표의 종류는 '상표종류' 중의 한 란에 체크해야 한다. (일반, 단체, 증명 등 세가지 중 한가지에 체크하고, 입체와 색상은 복수선택이 가능함)
3. 동일상표를 공동 출원시 출원인 명칭/주소 란에 대표자 명칭/주소를 기입하고, '공동 출원여부'란에 '예'를 선택한 후, 기타 공동 출원인은 상표등록출원서(첨부)에 명칭을 기입한다.(주소는 기입하지 않음)
4. 비용기준 : 상표등록출원비용1,000위안, 지정상품/서비스 항목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10개는 포함하지 않음) 지정상품/서비스 한 개당 100위안 추가한다. 단체표장과 증명상표 출원 비용은 3,000위안이다.
5. '상표설명'에는 상표도안이 외국어인 경우 그 의미, 특수폰트, 입체/색상 상표에 대한 설명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将一张商标图样贴在格内，另附五份商标图样。指定颜色的附着色图样五份和黑白稿一份。图样应不大于10×10cm，不小于5×5cm。

注：

一、未委托代理的，不需填写代理项目。

二、申请商标的种类在“商标种类”一栏的方框中选择。（一般、集体、证明三项只能选其一，立体和颜色可以多选）

三、共同申请注册同一商标的，申请人名称/地址栏填写代表人名称/地址，同时在“是否共同申请”一栏选择“是”，其他共同申请人在申请表附页填写名称。（不需要填写地址）

四、收费标准：受理商标注册费1000元，10个商品/服务项目以上（不含10个），每超过一个，另加收100元。受理集体商标注册费3000元，受理证明商标注册费3000元。

五、“商标说明”一栏填写内容：商标图样外文的含义、特殊字体的文字表述、立体/颜色商标的说明。

상표등록 출원서 (첨부)

기타 공동 출원인 리스트 :

商标注册申请书（附页）

其他共同申请人名义列表：

상표대리 위임장

본인/본인 회사_____는_____국적으로,
_____국가 법률에 의해 설립되었고, 현재_____
_____위임받아_____상표의 아래'√'업무를 대리하고 있음.

□상표등록출원
□상표이의신청
□상표출원인・등록인 명의 변경/주소 변경신청
□상품/서비스 삭제신청
□상표대리인 변경신청
□상표출원/등록사항 정정신청
□상표출원/상표등록 양도신청
□상표연장등록출원
□3년 연속 사용이 정지된 등록상표에 대한 취소신청
□상표말소신청
□등록인사망/상표말소중지신청
□변경/양도/연장증명 추가발급신청
□상표등록증 추가발급신청
□상표등록증명 발급신청
□우선권증명문건 발급신청
□상표사용허가계약 등록신청
□상표사용허가계약 등록변경/사전중지신청
□상표권 담보등기신청
□상표등록출원 철회신청
□상표이의 철회신청
□상표평심업무
□기타

위 임 인 _____
주 소 _____ (날인)
연 락 인 _____ 전 화 _____
우편번호 _____ 년 월 일

商标代理委托书

我/我公司_____是_____国国籍、依_____国法律组成，现委托_____代理_____商标的如下“√”事宜。

□商标注册申请
□商标异议申请
□变更商标申请人/注册人名义/地址申请
□删减商品/服务项目申请
□变更商标代理人申请
□更正商标申请/注册事项申请
□转让申请/注册商标申请
□商标续展注册申请
□撤销连续三年停止使用注册商标申请
□商标注销申请
□注册人死亡/终止注销商标申请
□补发变更/转让/续展证明申请
□补发商标注册证申请
□提供商标注册证明申请
□提供优先权证明文件申请
□商标使用许可合同备案申请
□商标使用许可合同备案变更/提前终止申请
□商标专用权质押登记申请
□撤回商标注册申请申请
□撤回商标异议申请
□商标评审事宜
□其他

委 托 人 _____
地　　址 _____　（章戳）
联 系 人_____电 话 _____
邮政编码 _____　　年　　月　　日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신구조문 대비
(2008년 12월27일 통과, 2009년 10월1일부터 발효)

현행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발명창조 특허권을 보호하고, 발명창조를 장려하여 발명창조의 폭넓은 응용과 과학기술의 진보와 창조를 촉진시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수요에 부합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특허권자의 합법적 권익보호・발명창조의 장려・발명창조의 응용추진・창조능력의 제고・과학기술의 진보 및 경제사회발전의 촉진을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법에서 발명창조라 함은 발명・실용신안 및 디자인을 말한다.	제2조 ①이 법에서 발명창조라 함은 발명・실용신안 및 디자인을 말한다. ②발명이란 제품・방법 또는 그 개량한 것에 대하여 제출한 새로운 기술방안을 말한다. ③실용신안이란 제품의 형상・구조 또는 그 결합에 대하여 제출한 실용에 적합한 새로운 기술방안을 말한다. ④디자인이란 제품의 형상・도안 또는 그 결합 및 색채와 형상・도안의 결합에 대하여 만들어진 풍부한 미감이 있고 공업응용에 적합한 새로운 설계를 말한다.
제3조 ①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전국의 특허업무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특허출원을 통일적으로 접수・심사하여 법에 따라 특허권을 수여한다. ②성・자치구・직할시의 인민정부에서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의 특허관리업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제3조 ①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전국의 특허업무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특허출원을 통일적으로 접수・심사하여 법에 의하여 특허권을 수여한다. ②성・자치구・직할시의 인민정부에서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의 특허관리업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제4조 특허를 출원한 발명창조가 국가의 안전 또는 중대한 이익에 관련되어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 특허를 출원한 발명창조가 국가의 안전 또는 중대한 이익에 관련되어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국가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5조 국가법률 또는 사회공공도덕에 위반되거나 공공이익을 방해하는 발명창조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수여하지 않는다.	제5조 ①법률 또는 사회공공도덕에 위반되거나 공공이익을 방해하는 발명창조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②법률 또는 행정법규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전자원을 획득・이용하고 당해 유전자원에 의존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특허권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현행	개정
제6조 ①본 단위의 임무를 집행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직무발명창조이다. 직무발명창조에 대한 특허를 출원할 권리는 당해 단위에 속하며, 출원이 비준된 후에는 당해 단위가 특허권자이다. ②비직무발명창조에 대한 특허를 출원할 권리는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 속하고, 출원이 비준된 후에는 당해 발명자 또는 설계자가 특허권자이다. ③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에 대하여, 단위와 발명자 또는 설계자가 체결한 계약이 있고 특허를 출원할 권리와 특허권의 귀속에 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	제6조 ①본 단위의 임무를 집행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직무발명창조이다. 직무발명창조에 대한 특허를 출원할 권리는 당해 단위에 속하며, 출원이 비준된 후에는 당해 단위가 특허권자이다. ②비직무발명창조에 대한 특허를 출원할 권리는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 속하고, 출원이 비준된 후에는 당해 발명자 또는 설계자가 특허권자이다. ③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에 대하여, 단위와 발명자 또는 설계자가 체결한 계약이 있고 특허를 출원할 권리와 특허권의 귀속에 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
제7조 발명자 또는 설계자의 비직무발명창조에 대한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제한할 수 없다.	제7조 발명자 또는 설계자의 비직무발명창조에 대한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제한할 수 없다.
제8조 둘 이상의 단위나 개인이 합작하여 완성한 발명창조・하나의 단위 또는 개인이 기타 단위 또는 개인의 위탁을 받아 완성한 발명창조는 별도의 협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권리는 완성 또는 공동완성한 단위 또는 개인에 속하며 출원이 비준된 후 출원한 단위 또는 개인이 특허권자이다.	제8조 둘 이상의 단위 또는 개인이 합작하여 완성한 발명창조・하나의 단위 또는 개인이 기타 단위 또는 개인의 위탁을 받아 완성한 발명창조는 별도의 협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권리는 완성 또는 공동완성한 단위 또는 개인에 속하며, 출원이 비준된 후 출원한 단위 또는 개인이 특허권자이다.
제9조 둘 이상의 출원인이 각자 동일한 발명창조에 대하여 특허를 출원한 경우, 특허권은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9조 ①동일한 발명창조는 하나의 특허권만 수여한다. 다만, 동일 출원인이 동일한 날 동일한 발명창조에 대하여 실용신안특허와 발명특허를 출원하여, 먼저 취득한 실용신안특허권이 아직 종료하지 않았고, 출원인이 당해 실용신안특허권의 포기를 성명할 경우, 발명특허권을 수여할 수 있다. ②둘 이상의 출원인이 각자 동일한 발명창조에 대하여 특허를 출원한 경우, 특허권은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10조 ①특허출원권과 특허권은 양도할 수 있다. ②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이 외국인에게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을 양도할 경우, 반드시 국무원 유관주관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③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을 양도할 경우, 당사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등기해야 하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공고한다.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의 양도는 등록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0조 ①특허출원권과 특허권은 양도할 수 있다. ②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이 외국인・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조직에게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을 양도할 경우,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한다. ③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을 양도할 경우, 당사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등기해야 하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공고한다.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의 양도는 등록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현행	개정
제11조 ①발명 및 실용신안특허권이 수여된 후,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단위 또는 개인도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를 실시할 수 없다. 즉, 생산경영의 목적으로 당해 특허제품을 제조・사용・판매를 위한 전시・판매・수입하거나, 또는 그 특허방법의 사용 및 당해 특허방법에 의하여 직접 획득한 제품을 사용・판매를 위한 전시・판매・수입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디자인특허권이 수여된 후, 어떤 단위 또는 개인도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를 실시할 수 없다. 즉, 생산경영의 목적으로 그 디자인특허제품을 제조・판매・수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①발명 및 실용신안특허권이 수여된 후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단위 또는 개인도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를 실시할 수 없다. 즉, 생산경영의 목적으로 당해 특허제품을 제조・사용・판매를 위한 전시・판매・수입하거나, 또는 그 특허방법의 사용 및 당해 특허방법에 의하여 직접 획득한 제품을 사용・판매를 위한 전시・판매・수입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디자인특허권이 수여된 후, 어떤 단위 또는 개인도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를 실시할 수 없다. 즉, 생산경영의 목적으로 그 디자인특허제품을 제조・판매를 위한 전시・판매・수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어떤 단위 또는 개인이 타인의 특허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특허권자와 서면으로 실시허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특허권자에게 특허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피허가인은 계약규정이외의 어떠한 단위 또는 개인에게도 당해 특허의 실시를 허가할 권리가 없다.	제12조 어떤 단위 또는 개인이 타인의 특허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특허권자와 실시허가계약을 체결하고 특허권자에게 특허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피허가인은 계약규정이외의 어떠한 단위 또는 개인에게도 당해 특허의 실시를 허가할 권리가 없다.
제13조 발명특허출원이 공개된 후, 출원인은 그의 발명을 실시하는 단위 또는 개인에게 적당한 비용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발명특허출원이 공개된 후, 출원인은 그의 발명을 실시하는 단위 또는 개인에게 적당한 비용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① 국유기업 사업단위의 발명특허가 국가이익 또는 공공이익에 중대한 의의가 있는 경우, 국무원 유관주관부서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고, 비준의 범위 내에서 광범한 응용을 결정하여 지정한 단위에게 실시를 허락할 수 있으며, 실시하는 단위는 국가규정에 따라 특허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한다. ② 중국의 집체소유제 단위 및 개인의 발명특허가 국가이익 또는 공공이익에 대하여 중대한 의의가 있고 광범위한 응용이 필요한 경우, 전항의 규정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제14조 국유기업 사업단위의 발명특허가 국가이익 또는 공공이익에 중대한 의의가 있는 경우, 국무원 유관주관부서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고, 비준의 범위 내에서 광범한 응용확산을 결정하여 지정한 단위에게 실시를 허락할 수 있으며, 실시하는 단위는 국가규정에 따라 특허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한다.
	제15조 ①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의 공유자가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 약정이 없는 경우, 공유자는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보통허가방식으로 타인에게 당해 특허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타인에게 당해 특허의 실시를 허락한 경우, 취득한 실시료는 공유자간에 분배해야 한다. ②전항 규정을 제외하고 공유의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의 행사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행	개정
제16조 특허권을 수여받은 단위는 직무발명창조의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장려를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창조특허를 실시한 후에는 응용의 범위 및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근거하여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합리적인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 특허권을 수여받은 단위는 직무발명창조의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장려를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창조특허를 실시한 후에는 응용확산의 범위 및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근거하여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합리적인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 발명자 또는 설계자는 특허문서에 자기가 발명자 또는 설계자임을 명기할 권리가 있다. 제15조 특허권자는 그의 특허제품 또는 당해 제품의 포장에 특허표기와 특허번호를 표시할 권리가 있다.	제17조 ①발명자 또는 설계자는 특허문서에 자기가 발명자 또는 설계자임을 명기할 권리가 있다. ②특허권자는 그의 특허제품 또는 당해 제품의 포장에 특허를 표기할 권리가 있다.
제18조 중국에 계속적인 거소나 영업장소가 없는 외국인·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 조직이 중국에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그가 소속한 국가와 중국이 체결한 협의·공동 참가한 국제조약 또는 호혜원칙에 따라 이 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8조 중국에 계속적인 거소나 영업장소가 없는 외국인·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 조직이 중국에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그가 소속한 국가와 중국이 체결한 협의·공동 참가한 국제조약 또는 호혜원칙에 따라 이 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9조 ①중국에 계속적인 거소나 영업장소가 없는 외국인·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 조직이 중국에서 특허를 출원하거나 기타 특허업무를 처리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지정한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이 국내에서 특허를 출원하거나 기타 특허업무를 처리할 경우,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특허대리기구는 법률·행정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피대리인의 위탁에 따라 특허출원 또는 기타 특허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피대리인의 발명창조 내용에 대하여 특허출원이 공개 또는 공고된 경우를 제외하고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특허대리기구의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19조 ①중국에 계속적인 거소나 영업장소가 없는 외국인·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 조직이 중국에서 특허를 출원하거나 기타 특허업무를 처리할 경우, 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이 국내에서 특허를 출원하거나 기타 특허업무를 처리할 경우, 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특허대리기구는 법률·행정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피대리인의 위탁에 따라 특허출원 또는 기타 특허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피대리인의 발명창조 내용에 대하여 특허출원이 공개 또는 공고된 경우를 제외하고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특허대리기구의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첨부.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신구조문 대비

현행	개정
제20조 ①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이 국내에서 완성한 발명창조를 외국에 특허출원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허를 출원하고 지정된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이 법 제4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은 중국이 참가한 관련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특허국제출원을 할 수 있다. 출원인이 특허국제출원을 할 경우, 전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중국이 참가한 국제조약・이 법 및 국무원 관련 규정에 의하여 특허국제출원을 처리한다.	제20조 ①어떤 단위 또는 개인은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외국에 특허출원할 경우, 먼저 보고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비밀유지심사를 거쳐야 한다. 비밀유지심사의 절차・기한 등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②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은 중국이 참가한 관련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특허국제출원을 할 수 있다. 출원인이 특허국제출원을 할 경우, 전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중국이 참가한 관련 국제조약・이 법 및 국무원 관련 규정에 의하여 특허국제출원을 처리한다. ④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에 특허를 출원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하여 중국에 특허를 출원한 경우, 특허권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21조 ①국무원 특허행정부서 및 특허복심위원회는 객관・공정・정확・즉시의 요구에 따라, 법에 의하여 관련 특허의 출원 및 청구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특허출원의 공개 또는 공고 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직원 및 관련근무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제21조 ①국무원 특허행정부서 및 특허복심위원회는 객관・공정・정확・즉시의 요구에 따라, 법에 의하여 관련 특허의 출원 및 청구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완전하고 정확하며 즉시에 특허정보를 전파하고 정기적으로 특허공보를 출판하여야 한다. ③특허출원의 공개 또는 공고 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직원 및 관련 근무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제2장 특허권 수여조건 제22조 ①특허권을 수여하는 발명과 실용신안은 신규성・창조성 및 실용성을 구비해야 한다. ②신규성이란 출원일 이전에 동일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국내・외 출판물에 공개 발표되었거나 국내에서 공개 사용된 적이 없으며, 또는 기타 방식으로 공중이 알고 있지 않아야 하고, 타인이 동일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출원하여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특허출원 문서 중에 기재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③창조성이란 출원일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기술과 비교하여, 당해 발명은 돌출한 실질적 특징과 현저한 진보가 있고, 당해 실용신안은 실질적 특징과 진보가 있는 것을 말한다. ④실용성이란 당해 발명과 실용신안이 제조 또는 사용될 수 있고, 적극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2장 특허권 수여조건 제22조 ①특허권을 수여하는 발명과 실용신안은 신규성・창조성 및 실용성을 구비해야 한다. ②신규성이란 당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현존기술에 속하지 않아야 하며, 어떤 단위 또는 개인이 동일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하여 출원일 이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출원하지 않아야 하고, 출원일 이후 공개된 특허출원서류 또는 공고된 특허서류 중에 기재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③창조성이란 현존기술과 비교하여 당해 발명은 돌출한 실질적 특징과 현저한 진보를 구비하고 있고, 당해 실용신안은 실질적 특징과 진보를 구비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④실용성이란 당해 발명과 실용신안을 제조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적극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⑤이 법 규정의 현존기술이란 출원일 이전 국내외에서 공중이 알고 있는 기술을 말한다.

현행	개정
제23조 특허권을 수여하는 디자인은 출원일 이전에 국내외 출판물에 공개 발표되었거나, 국내에서 공개적으로 사용된 적이 있는 디자인과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아야 하며, 타인이 먼저 취득한 합법적인 권리와 서로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	제23조 ①특허권을 수여하는 디자인은 현존설계에 속하지 않아야 하며, 어떤 단위 또는 개인이 동일한 디자인에 대하여 출원일 이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출원하지 않아야 하고, 출원일 이후에 공고된 특허서류 중에 기재되지 않아야 한다. ②특허권을 수여하는 디자인은 현존설계 또는 현존설계의 특징적 조합과 상호 비교하여 명백한 구별이 있어야 한다. ③특허권을 수여하는 디자인은 타인이 출원일 이전에 이미 취득한 합법적인 권리와 서로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 ④이 법 규정의 현존설계란 출원일 이전 국내외에서 공중이 알고 있는 설계를 말한다.
제24조 특허를 출원한 발명창조가 출원일 이전 6개월 내에 아래에 열거한 사항 중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1. 중국정부가 주관하거나 또는 승인한 국제전람회에 최초로 전시한 경우 2. 규정된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에 최초로 발표한 경우 3. 타인이 출원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누설한 경우	제24조 특허를 출원한 발명창조가 출원일 이전 6개월 내에 아래에 열거한 사항 중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1. 중국정부가 주관하거나 또는 승인한 국제전람회에 최초로 전시한 경우 2. 규정된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에 최초로 발표한 경우 3. 타인이 출원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누설한 경우
제25조 ①아래에 열거된 각호에 대하여 특허권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1. 과학발견 2. 지능 활동의 규칙과 방법 3. 질병의 진단 및 치료방법 4. 동물 및 식물의 품종 5. 원자핵 변환방법을 이용하여 획득한 물질 ②전 항 제4호에 열거한 제품의 생산방법에 대해서는 이 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특허권을 수여할 수 있다.	제25조 ①아래에 열거된 각호에 대하여 특허권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1. 과학발견 2. 지능 활동의 규칙과 방법 3. 질병의 진단·치료 및 방법 4. 동물 및 식물의 품종 5. 원자핵 변환방법을 이용하여 획득한 물질 6. 평면인쇄품의 도안·색채 또는 양자를 결합하여 만들어진 주로 표지작용을 하는 설계 ②전 항 제4호에 열거한 제품의 생산방법에 대해서는 이 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특허권을 수여할 수 있다.

현행	개정
제3장 특허출원 제26조 ①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를 출원할 경우, 청구서·설명서 및 그 요약과 권리요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구서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명칭, 발명자 또는 설계자의 성명, 출원인 성명 또는 명칭·주소 및 기타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설명서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하여 명확·완전한 설명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소속 기술영역의 기술자가 실현할 수 있음을 기준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요약은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적인 요점을 간략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④권리요구서는 설명서에 근거하여야 하며, 특허보호를 요구하는 범위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3장 특허출원 제26조 ①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를 출원할 경우, 청구서·설명서 및 그 요약과 권리요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구서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명칭, 발명자 또는 설계자의 성명, 출원인 성명 또는 명칭·주소 및 기타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설명서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하여 명확·완전한 설명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소속 기술영역의 기술자가 실현할 수 있음을 기준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요약은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요점을 간략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④권리요구서는 설명서에 근거하여야 하며, 명확·간단하게 특허보호를 요구하는 범위를 한정하여야 한다. ⑤유전자원에 의존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출원인이 특허출원서류에 당해 유전자원의 직접 출처와 원시출처를 설명해야 하고, 출원인이 원시출처를 설명할 수 없는 경우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27조 디자인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청구서 및 당해 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당해 디자인을 사용한 제품 및 소속 류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27조 ①디자인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청구서·당해 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및 당해 디자인에 대한 간단한 설명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출원인이 제출한 관련 도면 또는 사진은 특허보호를 요구하는 물품의 디자인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제28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출원서류를 받은 날을 출원일로 한다. 출원서류가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발송 소인일을 출원일로 한다.	제28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출원서류를 받은 날을 출원일로 한다. 출원서류가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발송 소인일을 출원일로 한다.
제29조 ①출원인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외국에 제1차로 출원한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또는 디자인을 외국에 제1차로 출원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중국에 동일한 주제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당해 외국과 중국이 체결한 협의 또는 공동 참가한 국제조약에 의하여, 또는 상호 승인한 우선권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②출원인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중국에 제1차로 출원한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다시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동일한 주제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제29조 ①출원인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외국에 제1차로 출원한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또는 디자인을 외국에 제1차로 출원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중국에 동일한 주제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당해 외국과 중국이 체결한 협의 또는 공동 참가한 국제조약에 의하여, 또는 상호 승인한 우선권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②출원인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중국에 제1차로 출원한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다시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동일한 주제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현행	개정
제30조 출원인이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 출원 시 서면성명을 제출해야 하고 3개월 내에 1차로 제출한 특허출원 서류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서면성명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이 경과하여도 특허출원 서류 부본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우선권을 요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0조 출원인이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 출원 시 서면성명을 제출해야 하고 3개월 내에 1차로 제출한 특허출원 서류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서면성명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이 경과하여도 특허출원 서류 부본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우선권을 요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1조 ①1건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출원은 1항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한정하여야 한다. 하나의 총괄적인 발명사상에 속하는 2항 이상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은 1건 출원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1건 디자인특허출원은 한 종류의 물품에 사용하는 1항 디자인에 한정하여야 한다. 동일 류이고 한 벌로 판매 또는 사용되는 물품의 2항 이상의 디자인은 1건 출원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31조 ①1건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출원은 1항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한정하여야 한다. 하나의 총괄적인 발명사상에 속하는 2항 이상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은 1건 출원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1건 디자인특허출원은 1항 디자인에 한정하여야 한다. 동일 물품의 2항 이상의 유사한 디자인 또는 동일 류이고 한 벌로 판매 또는 사용되는 물품의 2항 이상 디자인은 1건 출원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32조 출원인은 특허권이 수여되기 전에 언제든지 그 특허출원을 취하할 수 있다.	제32조 출원인은 특허권이 수여되기 전에 언제든지 그 특허출원을 취하할 수 있다.
제33조 출원인은 특허출원 서류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으나, 발명과 실용신안특허출원 서류에 대한 보정은 원 설명서 및 권리요구서에 기재된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디자인특허출원 서류에 대한 보정은 원 도면 또는 사진에 표시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33조 출원인은 특허출원 서류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으나, 발명과 실용신안특허출원 서류에 대한 보정은 원 설명서 및 권리요구서에 기재된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디자인특허출원 서류에 대한 보정은 원 도면 또는 사진에 표시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4장 특허출원의 심사와 비준 제34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출원을 접수한 후 초보심사를 거쳐 이 법의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만 18개월에 즉시 공개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출원을 조기에 공개할 수 있다.	제4장 특허출원의 심사와 비준 제34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출원을 접수한 후 초보심사를 거쳐 이 법의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만 18개월에 즉시 공개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출원을 조기에 공개할 수 있다.
제35조 ①발명특허출원은 출원일로부터 3년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이 수시로 제출한 청구에 의하여 그 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출원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을 경과하여 실질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스스로 발명특허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35조 ①발명특허출원은 출원일로부터 3년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이 수시로 제출한 청구에 의하여 그 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출원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을 경과하여 실질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스스로 발명특허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첨부.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신구조문 대비

현행	개정
제36조 ①발명특허의 출원인은 실질심사 청구시, 출원일 전에 그 발명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발명특허를 이미 외국에 출원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에게 지정기한 내에 당해 국가가 그 출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검색한 자료 또는 심사결과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6조 ①발명특허의 출원인은 실질심사 청구시, 출원일 전에 그 발명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발명특허를 이미 외국에 출원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에게 지정기한 내에 당해 국가가 그 출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검색한 자료 또는 심사결과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7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출원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이 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원인에게 통지하여 지정기한 내에 의견진술을 하거나 당해 출원에 대한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을 초과하여 답변이 없을 경우 당해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7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출원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이 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원인에게 통지하여 지정기한 내에 의견진술을 하거나 당해 출원에 대한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을 초과하여 답변이 없을 경우 당해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8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의 의견진술 또는 보정 후에도 발명특허출원이 여전히 이 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거절하여야 한다.	제38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의 의견진술 또는 보정 후에도 발명특허출원이 여전히 이 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거절하여야 한다.
제39조 발명특허출원이 실질심사를 거쳐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권 수여를 결정하고 발명특허증서의 발급과 동시에 등록 및 공고한다. 발명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39조 발명특허출원이 실질심사를 거쳐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권 수여를 결정하고 발명특허증서의 발급과 동시에 등록 및 공고한다. 발명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40조 실용신안 및 디자인특허출원은 초보심사를 거쳐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실용신안특허권 또는 디자인특허권의 수여를 결정하고, 상응한 특허증서의 발급과 동시에 등록 및 공고한다. 실용신안특허권과 디자인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40조 실용신안 및 디자인특허출원은 초보심사를 거쳐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실용신안특허권 또는 디자인특허권의 수여를 결정하고, 상응한 특허증서의 발급과 동시에 등록 및 공고한다. 실용신안특허권과 디자인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41조 ①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복심위원회를 설치한다. 특허출원인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출원거절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허복심위원회에 복심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복심위원회는 복심 후, 결정하여 특허출원인에게 통지한다. ②특허출원인이 특허복심위원회의 복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41조 ①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복심위원회를 설치한다. 특허출원인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출원거절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허복심위원회에 복심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복심위원회는 복심 후, 결정하여 특허출원인에게 통지한다. ②특허출원인이 특허복심위원회의 복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현행	개정
제5장 특허권의 기간・종료 및 무효 제42조 발명특허권의 기간은 20년, 실용신안 특허권과 디자인특허권의 기간은 10년으로 하며, 모두 출원일로부터 계산한다.	제5장 특허권의 기간・종료 및 무효 제42조 발명특허권의 기간은 20년, 실용신안 특허권과 디자인특허권의 기간은 10년으로 하며, 모두 출원일로부터 계산한다.
제43조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수여받은 당해 연도부터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3조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수여받은 당해 연도부터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4조 ①아래의 열거된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권은 기간만료 전에 종료한다. 1. 규정에 의한 연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특허권자가 서면으로 특허권 포기를 성명한 경우 ②특허권이 기간만료 전에 종료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등록 및 공고한다.	제44조 ①아래의 열거된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권은 기간만료 전에 종료한다. 1. 규정에 의한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특허권자가 서면으로 특허권 포기를 성명한 경우 ②특허권이 기간만료 전에 종료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등록 및 공고한다.
제45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특허권 수여를 공고한 날로부터 누구든지 당해 특허권의 수여가 이 법의 관련규정과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허복심위원회에 당해 특허권의 무효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제45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특허권 수여를 공고한 날로부터 누구든지 당해 특허권의 수여가 이 법의 관련규정과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허복심위원회에 당해 특허권의 무효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제46조 ①특허복심위원회는 특허권 무효선고 청구에 대하여 즉시에 심사・결정하고 청구인과 특허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특허권 무효선고의 결정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등록 및 공고한다. ②특허복심위원회의 특허권을 무효 또는 유지 선고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무효선고 청구절차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3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 ①특허복심위원회는 특허권 무효선고 청구에 대하여 즉시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과 특허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특허권 무효선고의 결정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등록 및 공고한다. ②특허복심위원회의 특허권을 무효 또는 유지 선고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무효선고 청구절차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3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
제47조 ①무효가 선고된 특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특허권 무효선고의 결정은 특허권 무효선고 전에 인민법원이 결정하여 이미 집행한 특허권 침해의 판결·재정, 이미 이행 또는 강제 집행한 특허침해분쟁의 처리결정 및 이미 이행한 특허실시허가계약과 특허권양도계약에 대하여 소급력을 가지지 않는다. 다만, 특허권자가 악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③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 양도인이 허가를 받은 실시권자 또는 특허권 양수인에게 특허사용료 또는 특허권 양도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 양도인은 허가를 받은 실시권자 또는 특허권 양수인에게 특허사용료 또는 특허권 양도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7조 ①무효가 선고된 특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특허권 무효선고의 결정은 특허권 무효선고 전에 인민법원이 결정하여 이미 집행한 특허권 침해의 판결·화해, 이미 이행 또는 강제 집행한 특허침해분쟁의 처리결정 및 이미 이행한 특허실시허가계약과 특허권양도계약에 대하여 소급력을 가지지 않는다. 다만, 특허권자가 악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③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 침해 배상액·특허사용료 또는 특허권 양도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장 특허실시의 강제허가 제48조 실시조건을 구비한 단위가 합리적인 조건으로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권자에게 그 특허의 실시허가를 청구하였으나,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이러한 허가를 얻지 못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당해 단위의 신청에 근거하여 당해 발명특허 또는 실용신안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강제허가를 수여할 수 있다.	제6장 특허실시의 강제허가 제48조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실시조건을 구비한 단위 또는 개인의 신청에 의하여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를 실시하는 강제허가를 할 수 있다. 1.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수여받은 날로부터 만 3년, 게다가 특허출원일로부터 만 4년까지 정당한 이유없이 그 특허권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충분하게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특허권자의 특허권 행사행위가 법에 의하여 독점행위로 인정받고 그 행위를 배제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경쟁에 발생하는 불리한 영향이 있는 경우
제49조 국가에 긴급 상황 또는 비상사태가 출현하거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 또는 실용신안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강제허가를 수여할 수 있다.	제49조 국가에 긴급 상황 또는 비상사태가 출현하거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 또는 실용신안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강제허가를 수여할 수 있다.
	제50조 공공의 건강목적을 위하여, 특허권을 취득한 약품에 대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제조하여 중국이 참가한 관련 국제조약 규정에 부합한 국가 또는 지역에 수출할 수 있는 강제허가를 수여할 수 있다.

현행	개정
제50조 ①특허권을 취득한 1항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이전에 이미 특허권을 취득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비하여 현저한 경제적 의의의 중대한 기술진보가 있고, 그 실시가 전(前)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실시해야만 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후(后) 특허권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전(前)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실시할 수 있는 강제허가를 수여할 수 있다. ②전 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강제허가를 수여하는 상황 하에서,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전(前) 특허권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후(后)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실시할 수 있는 강제허가를 수여할 수 있다.	제51조 ①특허권을 취득한 1항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이전에 이미 특허권을 취득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비하여 현저한 경제적 의의의 중대한 기술진보가 있고, 그 실시가 전(前)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실시해야만 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후(后) 특허권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전(前)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실시할 수 있는 강제허가를 수여할 수 있다. ②전 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강제허가를 수여하는 상황 하에서,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전(前) 특허권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후(后)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실시할 수 있는 강제허가를 수여할 수 있다.
	제52조 강제허가와 관련된 발명창조가 반도체 기술인 경우, 그 실시는 공공이익의 목적 및 이 법 제48조제2호 규정의 상황에 한정한다.
	제53조 이 법 제48조제2호 또는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수여한 강제허가를 제외하고, 강제허가의 실시는 주로 국내시장의 공급을 위해서 해야 한다.
제51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실시강제허가를 신청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합리적인 조건으로 특허권자와 실시허가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는 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 이 법 제48조제1호 또는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강제허가를 신청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증거를 제출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특허권자에게 특허를 실시하는 허가를 청구하였으나, 합리적인 시간 내에 허가를 획득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제52조 ①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실시강제허가를 수여하는 결정을 한 경우, 즉시 특허권자에 통지하고 등록 및 공고하여야 한다. ②실시강제허가를 수여하는 결정은 강제허가의 이유에 근거하여 실시범위 및 시간을 규정하여야 한다. 강제허가의 이유가 해소되고 다시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심사를 거친 후 실시강제허가를 종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5조 ①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실시강제허가를 수여하는 결정을 한 경우, 즉시 특허권자에 통지하고 등록 및 공고하여야 한다. ②실시강제허가를 수여하는 결정은 강제허가의 이유에 근거하여 실시범위 및 시간을 규정하여야 한다. 강제허가의 이유가 해소되고 다시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심사를 거친 후 실시강제허가를 종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3조 실시강제허가를 취득한 단위 또는 개인은 독점적 실시권을 향유할 수 없고, 타인에게 실시를 허락할 권한이 없다.	제56조 실시강제허가를 취득한 단위 또는 개인은 독점적 실시권을 향유할 수 없고, 타인에게 실시를 허락할 권한이 없다.

첨부.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신구조문 대비

현행	개정
제54조 실시강제허가를 취득한 단위 또는 개인은 특허권자에게 합리적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고, 그 액수는 쌍방이 협상하여 정하며, 쌍방이 협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재결한다.	제57조 실시강제허가를 취득한 단위 또는 개인은 특허권자에게 합리적인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또는 중국이 참가한 관련 국제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사용료를 지급할 경우 그 액수는 쌍방이 협상하여 정하며, 쌍방이 협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재결한다.
제55조 특허권자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실시강제허가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특허권자와 실시강제허가를 취득한 단위 또는 개인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실시강제허가의 사용료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58조 특허권자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실시강제허가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특허권자와 실시강제허가를 취득한 단위 또는 개인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실시강제허가의 사용료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7장 특허권 보호 제56조 ①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권의 보호범위는 그 권리요구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설명서 및 첨부 도면은 권리요구를 해석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②디자인특허권의 보호범위는 도면 또는 사진에 표시된 당해 디자인특허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제7장 특허권 보호 제59조 ①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권의 보호범위는 그 권리요구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설명서 및 첨부 도면은 권리요구를 해석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②디자인특허권의 보호범위는 도면 또는 사진에 표시된 당해 디자인특허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현행	개정
제57조 ①특허권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그 특허를 실시하여, 즉 특허권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협상하여 해결하고, 협상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 처리를 청구할 수 있다.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처리 시, 침해행위가 성립된다고 인정되면 침해자에게 침해행위의 즉시 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처리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중화인민공화국행정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침해자가 기한 내에 소를 제기하지도 아니하고 침해행위를 정지하지도 아니할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처리를 진행하는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특허권 침해에 대한 배상액의 조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특허권의 침해분쟁이 신제품 제조방법의 발명특허와 관련이 있는 경우,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그 제품의 제조방법이 특허방법과 동일하지 않다는 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실용신안특허와 관련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 또는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특허권자에게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작성한 검색보고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60조 특허권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그 특허를 실시하여, 즉 특허권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협상하여 해결하고, 협상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 처리를 청구할 수 있다.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처리 시, 침해행위가 성립된다고 인정될 경우 침해자에게 침해행위의 즉시 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처리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중화인민공화국행정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침해자가 기한 내에 소를 제기하지도 아니하고 침해행위를 정지하지도 아니할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처리를 진행하는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특허권 침해에 대한 배상액의 조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61조 ①특허권의 침해분쟁이 신제품 제조방법과 관련된 발명특허인 경우,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그 제품의 제조방법이 특허방법과 동일하지 않다는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②특허권의 침해분쟁이 실용신안특허 또는 디자인특허와 관련된 경우, 인민법원 또는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관련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에 대하여 검색·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작성한 특허권 평가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특허권 침해분쟁을 처리·심리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62조 특허권의 침해분쟁 중, 권리침해 혐의자가 그가 실시하는 기술 또는 설계가 현존기술 또는 현존설계에 속한다는 증거 및 증명이 있는 경우, 특허권 침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58조 타인의 특허를 도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지는 이외에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공고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3배 이내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 5만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3조 타인의 특허를 도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지는 이외에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공고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4배 이내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 2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현행	개정
제59조 비특허제품을 특허제품으로 사칭하거나 비특허방법을 특허방법으로 사칭한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공고하며, 5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64조 ①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이미 취득한 증거에 근거하여 특허도용 혐의행위에 대하여 조사·처리할 경우, 관련 당사자를 심문하고 위법행위 혐의와 관련된 상황의 조사, 당사자의 위법행위 혐의 장소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 위법행위 혐의와 관련된 계약·영수증·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의 조사·열람 및 복사, 위법행위 혐의와 관련된 제품을 검사할 수 있으며, 특허도용 제품에 대한 증거 및 증명이 있는 경우 조사·봉인 및 압류를 할 수 있다. ②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전항 규정의 직권을 행사할 경우, 당사자는 협조 및 협력해야 하며 거절 또는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60조 특허권 침해에 대한 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받은 손해 또는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의하여 확정하고, 침해를 받은 권리자의 손해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의 확정이 곤란한 경우 당해 특허허가실시료의 배수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제65조 ①특허권 침해에 대한 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받은 실제 손실에 의하여 확정하고, 실제 손실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의하여 확정한다. 권리자의 손실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의 확정이 곤란한 경우 당해 특허허가실시료의 배수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배상액에는 권리자가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지급한 합리적 비용도 포함한다. ②권리자의 손실·침해자가 얻은 이익 및 특허허가실시료 모두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인민법원은 특허권의 종류·침해행위의 성질 및 상황 등의 인수에 따라 1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배상을 확정할 수 있다.

현행	개정
제61조 ①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타인이 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실시하고 있거나 또는 곧 실시하려고 하는 증거와 증명이 있고, 이를 즉시에 제지하지 아니하면 그의 합법적 권익에 보충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소를 제기하기 전 인민법원에 관련 행위의 정지와 재산보전조치를 명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인민법원이 전 항의 신청을 처리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제93조 내지 제96조 및 제9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6조 ①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타인이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실시하고 있거나 또는 곧 실시하려고 하는 증거와 증명이 있고, 이를 즉시에 제지하지 아니하면 그의 합법적 권익에 보충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관련 행위의 정지를 명하는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신청인은 신청 시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기각한다. ③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재정을 해야 하며, 특수상황이 있어 연장이 필요한 경우 48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관련 행위의 정지를 명한 경우 즉시 집행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재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한 차례 복의를 신청할 수 있으나 복의기간에 재정의 집행을 중지하지 아니한다. ④신청인은 인민법원이 관련 행위의 정지를 명하는 조치를 채택한 날로부터 15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당해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⑤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관련 행위의 정지로 인하여 입은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제67조 ①특허권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증거가 멸실 또는 이후에 취득하기 곤란한 경우,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소 제기 전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②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채택할 경우 신청인에게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기각한다. ③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재정을 해야 하고, 보전조치를 채택한 경우 즉시 집행하여야 한다. ④신청인이 인민법원의 증거보전조치를 채택한 날로부터 15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
제62조 ①특허권 침해에 대한 소송시효는 2년이며,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침해행위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게 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②발명특허출원이 공개된 후 특허권이 수여 전까지 당해 발명을 사용하고 적당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권자가 사용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소송시효는 2년이며, 특허권자가 타인이 그의 발명을 사용한 것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게 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다만, 특허권자가 특허권 수여일 전에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특허권을 수여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68조 ①특허권 침해에 대한 소송시효는 2년이며,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침해행위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게 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②발명특허출원이 공개된 후 특허권이 수여 전까지 당해 발명을 사용하고 적당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권자가 사용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소송시효는 2년이며, 특허권자가 타인이 그의 발명을 사용한 것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게 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다만, 특허권자가 특허권 수여일 전에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특허권을 수여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63조 ①아래에 열거된 사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특허권자가 제조・수입했거나, 특허권자의 허가를 얻어 제조・수입한 특허제품 또는 특허방법에 의하여 직접 획득한 제품이 판매된 후, 당해 제품을 사용・판매를 위한 전시 또는 판매하는 경우 2. 특허출원일 전에 이미 동일한 제품을 제조 또는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거나, 또는 이미 제조・사용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고 단지 원래의 범위 내에서 계속 제조・사용하는 경우 3. 일시적으로 중국영토・영해・영공을 통과하는 외국의 운송도구는 그 소속국가와 중국이 체결한 협의 또는 공동 참가한 국제조약, 또는 호혜원칙에 따라 운송도구 자체의 수요를 위하여 그 장치 및 설비 중에 관련 특허를 사용하는 경우 4. 전문적으로 과학연구 및 실험을 목적으로 관련 특허를 사용하는 경우 ②생산・경영의 목적을 위한 사용 또는 판매가 특허권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제조되어 판매된 특허제품 또는 특허방법에 의하여 직접 획득된 제품임을 몰랐고, 그 제품의 합법적인 출처를 증명할 수 있으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9조 아래에 열거된 사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특허제품 또는 특허방법에 의하여 직접 획득한 제품을 특허권자 또는 그가 허가한 단위・개인이 판매한 후, 당해 제품을 사용・판매를 위한 전시・판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 2. 특허출원일 전에 이미 동일한 제품을 제조 또는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거나, 또는 이미 제조・사용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고 단지 원래의 범위 내에서 계속 제조・사용하는 경우 3. 일시적으로 중국영토・영해・영공을 통과하는 외국의 운송도구는 그 소속국가와 중국이 체결한 협의 또는 공동 참가한 국제조약, 또는 호혜원칙에 의하여 운송도구 자체의 수요를 위하여 그 장치 및 설비 중에 관련 특허를 사용하는 경우 4. 전문적으로 과학연구 및 실험을 목적으로 관련 특허를 사용하는 경우 5. 행정심사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허약품 또는 특허의료기기를 제조・사용・수입하는 경우 및 이를 위하여 특허약품 또는 특허의료기기를 전문적으로 제조・수입하는 경우 제70조 생산경영을 위한 사용・판매를 위한 전시 또는 판매가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판매한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인 것을 모르고 그 제품의 합법적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4조 이 법 제20조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에 특허를 출원하여 국가기밀을 누설한 경우, 소속 단위 또는 상급주관기관이 행정처분을 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1조 이 법 제21조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에 특허를 출원하여 국가기밀을 누설한 경우, 소속 단위 또는 상급주관기관이 행정처분을 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현행	개정
제65조 발명자 또는 설계자의 비직무발명창조에 대한 특허출원권 및 이 법 규정의 기타 권익을 침탈하는 경우, 해당 단위 또는 상급주관기관이 행정처분을 한다.	제72조 발명자 또는 설계자의 비직무발명창조에 대한 특허출원권 및 이 법 규정의 기타 권익을 침탈하는 경우, 해당 단위 또는 상급주관기관이 행정처분을 한다.
제66조 ①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사회에 특허제품을 추천하는 등의 경영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②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의 상급기관 또는 감찰기관이 시정을 명하고 영향을 제거하며, 위법수입이 있을 경우 몰수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73조 ①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사회에 특허제품을 추천하는 등의 경영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②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의 상급기관 또는 감찰기관이 시정을 명하고 영향을 제거하며, 위법수입이 있을 경우 몰수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67조 특허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기관 직원 및 기타 유관 국가기관 직원이 직무소홀, 직권남용 및 사리사욕을 추구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74조 특허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기관 직원 및 기타 유관 국가기관 직원이 직무소홀, 직권남용 및 사리사욕을 추구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8장 부칙 제68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허를 출원하거나 기타 절차를 처리할 경우,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9조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장 부칙 제75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허를 출원하거나 기타 절차를 처리할 경우,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6조 이 법은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국 지식재산권 매뉴얼
발행인 : 조환익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08월 12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9(우 137-749)
전　화 : 82-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ipchinadesk.com
www.ois.go.kr
www.kipo.go.kr
www.kotra.or.kr